대전·충남지역 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서
〔2차개정〕

2009. 03. 23

충남대학교·공주대학교·한밭대학교·공주교육대학교
청람에듀빌주식회사



- 목 차 -

전 문 1

제 1 장 총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1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2
제 3 조 (용어의 정의) 3
제 4 조 (해석) 8
제 5 조 (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9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9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9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0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11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1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11

제 3 장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 11
제 13 조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변경) 12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13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14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14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공사의 도급) 14
제 18 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15
제 19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15
제 20 조 (설계, 인허가 등) 16
제 21 조 (실시계획의 승인) 16
제 22 조 (공사기간) 17
제 23 조 (공사의 착수) 18
제 24 조 (공정관리) 18
제 25 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19
제 26 조 (문화재) 20
제 27 조 (사업이행보증) 20

제 28 조 (지체상금) ····· 21
제 29 조 (보험가입) ····· 21
제 30 조 (업무감독 및 검사) ····· 22
제 31 조 (기성검사) ····· 22
제 32 조 (민원처리) ····· 23
제 33 조 (환경 및 안전관리) ····· 23
제 34 조 (공사책임감리) ····· 24
제 35 조 (부속시설) ····· 25
제 36 조 (준공전 사용인가) ····· 25
제 37 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 25
제 38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26
제 6 장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9 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 27
제 40 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 27
제 41 조 (운영비의 결정) ····· 28
제 42 조 (운영비의 변경) ····· 28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 29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획) ····· 29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 30
제 46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 30
제 47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 31
제 48 조 (경미한 사업) ····· 32
제 7 장 성과의 점검 · 평가
제 49 조 (성과의 측정 · 보고) ····· 32
제 50 조 (성과의 점검) ····· 33
제 51 조 (성과의 평가) ····· 34
제 52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 34
제 53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 35
제 54 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 35
제 8 장 정부지급금 산정 및 지급
제 55 조 (사업수익률의 산정) ····· 36
제 56 조 (사업수익률의 조정) ····· 37
제 57 조 (임대료의 산정) ····· 37
제 58 조 (임대료의 조정) ····· 38

제 59 조 (운영비의 산정) ····· 38
제 60 조 (운영비의 조정) ····· 38
제 61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 38
제 62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 ····· 39
제 9 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제 63 조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 39
제 64 조 (보상업무 등) ····· 40
제 65 조 (주무관청의 비재정적 지원) ····· 40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66 조 (위험배분의 원칙) ····· 41
제 67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41
제 68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42
제 69 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 43
제 70 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 44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71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 45
제 72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 46
제 73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 48
제 74 조 (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액 결정) ····· 48
제 75 조 (협약해지시의 조치) ····· 49
제 76 조 (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 50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77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 50
제 78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 50
제 79 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 51
제 80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 52
제 81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 52
제 13 장 분쟁의 해결
제 82 조 (분쟁의 해결) ····· 53
제 83 조 (중재) ····· 53
제 14 장 기타 사항
제 84 조 (협약의 변경) ····· 54
제 85 조 (협약의 수익자) ····· 55
제 86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 55

제 87 조 (일부무효) ····· 55
제 88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 55
제 89 조 (비밀유지) ····· 55
제 90 조 (통지) ····· 56
제 91 조 (준거법) ····· 57
제 92 조 (협약의 효력) ····· 57
부칙 ····· 58

별표01 본 사업의 개요
별표02 본 사업의 구조
별표03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별표04 총투자비 총민간투자비
별표05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별표06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별표07 보험가입계획
별표08 부속시설
별표09 부속시설의 운영 순이익
별표10 임대료 산정방법
별표11 임대료 및 지급스케쥴
별표12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쥴
별표13 본 시설의 수요
별표14 관리운영권의 인계
별표15 해지시지급금
별표16 재무모델(C/D)
별표17 유지관리비품 및 장비무상인계목록
별표18 대수선 및 수선충당금 적립계획

부록01 성과요구수준서(생략, 2006. 7. 31일자 실시협약서 참조)
부록02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생략, 2006. 7. 31일자 실시협약서 참조)
부록03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요령(생략, 2006. 7. 31일자 실시협약서 참조)
부록04 협상단 합의사항(생략, 2006. 7. 31일자 실시협약서 참조)
부록05 사업계획서(기술부문) - 따로붙임(생략, 2006. 7. 31일자 실시협약서 참조)
부록06 사업계획서(가격부문) - 따로붙임(생략, 2006. 7. 31일자 실시협약서 참조)
부록07 부속서류 Ⅰ(총민간투자비 및 정부지급금 산출근거) - 따로붙임(생략,2006. 7. 31일자 실시협약서 참조)
부록08 부속서류 Ⅱ(공사비 산출근거) - 따로붙임(생략, 2006. 7. 31일자 실시협약서 참조)
부록09 기본도면 - 따로붙임(생략, 2006. 7. 31일자 실시협약서 참조)
부록10 비품 수량 및 규격서(별표 17 참조)

대전·충남지역 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2차개정 2009. 03. 23

전 문

충남대학교 총장·공주대학교 총장·한밭대학교 총장·공주교육대학교 총장(이하"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대전·충남지역 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시설사업(BTL)**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본 사업 시설의 건설·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과 학생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무관청은 이러한 취지하에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본 사업 시설의 설계 · 건설 · 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전·충남지역 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 이라고 한다)을 2005년 9월 30일 수립·고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주무관청은 2006년 1월 16일 (가칭)청람에듀빌주식회사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본 실시협약의 체결에 이른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대전·충남지역 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규모는 별표01(본 사업의 개요)과 같다.

③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추진단계별로 당사자 간에 본 협약에서 정한 계약과

업무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구조는 별표02(본 사업의 구조)에 따른다.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1. 조사 및 설계,관계기관과의 인·허가사항 업무수행	인·허가를 위한 행정지원
2. 차입계약 등 재원조달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사착수 및 공정관리	업무감독 및 기성검사확인
4. 시설투자의 완료	준공검사확인
5. 시설의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의 설정
6. 시설의 임대개시	시설의 임차개시
7. 유지관리 및 운영	시설의 사용
8. 성과의 측정 및 보고	성과의 점검 및 평가
9. 차입금 상환 및 배당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10. 관리운영권의 인계	관리운영권의 인수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정한 방식에 [illegible]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며, 건설·운영상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충남대학교,공주대학교,한밭대학교,공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시설을 묶어서 1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② 본 사업시설의 이용 및 기능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 대학별 부속시설로 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③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임대료와 부속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순이익으로 회수된다.

④ 본 시설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는 주무관청에게 귀속되며, 본 시설의 사용에 따른 실제발생수요가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시설의 예측수요와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협약에서 이에 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주무관청에게 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산률"** 이라 함은 사업수익률 중에서 지표금리를 초과하는 제반 위험(Risk)을 감안한 위험보상률(Risk Premium)을 말한다.
- **"건설기간"** 이라 함은 이 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건설이자"** 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의 충당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건설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협약에서 정한 이자비용으로서 회계처리상 자산화 될 금액을 말한다.
- **"공사감리자"** 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에 정해진 책임감리를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에 따라 지정된 책임감리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한다.
- **"공사기간"** 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공사도급계약"** 이라 함은 본 사업의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체결되는 도급계약을 말한다.
- **"공사비"** 라 함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의하여 확정한 공사비를 말한다.
- **"관계기관"** 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법령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 **"관리운영권"** 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 **"국가계약법"** 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 **"기본재무모델"** 이라 함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 **"기준이자율"** 이라 함은 그 산정시점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사사오입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율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등급의 3년 만기인 회사채 최종호가 유통수익율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율로 대체한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회사채 최종호가 유통수익율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제13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 **"기준재무모델"** 이라 함은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승인 신청일까지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 **"담보권"** 이라 함은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채권확보의 법적,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대리은행"** 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대리은행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대체사업자"** 라 함은 본 협약 제78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 **"매수청구권"** 이라 함은 본 협약 및 민간투자법 제59조에 따른 본 사업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말한다.
- **"매수청구인정통지일"** 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시행령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에 따라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수를 인정하는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
- **"문화재"** 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로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예술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화석, 고대유물, 구조물 및 기타 잔재를 말한다.
- **"민간투자법"** 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67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 **"민간투자법 시행령"** 이라 함은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887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 **"민간투자법령"** 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의미한다.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 **"본 사업"**이라 함은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 **"본 사업부지"**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본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부속시설"**이라 함은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 **"분기"**라 함은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협약당사자로 하여금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 **"비교재무모델"**이라 함은 기준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 **"BTL 민간투자사업 (또는 BTL 방식)"**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게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또는 방식)을 말한다.
- **"사업계획서"**라 함은 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제반 서류를 말한다.
- **"사업기간"**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일로 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포함)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구분된다.
- **"사업년도"**라 함은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로 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년도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년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성과평가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목적으로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본 협약 제52조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소비자물가지수"** 라 함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전 도시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지수로 대체된다.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라 함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공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분기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 중 건설투자 GDP Deflator를 말한다.

-**"물가변동비"**라 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산출기준시점(2006년 7월 31일)부터 본 사업시설 준공예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 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이라 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산출기준시점(2006년 7월 31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운영비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예비비"**라 함은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 **"시공자"** 라 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실시계획"** 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 및 관련 도서(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를 말한다.

- **"운영비"** 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를 말한다.

- **"위험물"** 이라 함은 폭발물, 유독화학물질, 각종 폐기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손해 또는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유물"** 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로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예술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화석, 고대유물, 구조물 및 기타 잔재를 말한다.

- **"유지관리"** 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 **"임대료"** 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의 임대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 **"자금재조달(Refinancing)"** 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최근 자금차입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의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출자자 등의 변경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 수익률(ROE)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 **"자금차입계약"** 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본 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각종 금융계약 등을 말하며, 타인자본에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 **"정부지급금"** 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준공"** 이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 **"준공예정일"** 이라 함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시 그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 **"준공일"** 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사실을 확인한 날을 말한다.
- **"지장물"** 이라 함은 본 사업부지 내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목, 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 **"지표금리"** 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사업수행률의 산정을 위해 고려한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건설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는 4.96%이며 이후 본 협약 제55조(사업수익률의 산정), 제56조(사업수익률의 조정)에 따라 조정되는 금리를 말한다.
- **"착공일"** 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계상에 기재된 공사개시일을 말한다.
- **"채권금융기관"** 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타인자본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기관 이외의 자를 포함한다.
- **"총 민간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의 총사업비중에서 건설기간 동안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총 민간투자비**"는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각 분기별 투입예정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비는 직전분기말까지의 건설투자 GDP디플에이터 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총사업비**" 라 함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정되는 본 사업의 총사업비로서 부가세를 제외한 2006년 7월 31일 시점의 불변가를 의미한다.
- "**총투자비**" 라 함은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동이 반영된 경상사업비와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 "**출자자**" 라 함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본 협약 제79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라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 "**출자예정자**" 라 함은 사업시행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단계에서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협약당사자**" 라 함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 "**해지시 지급금**" 라 함은 본 협약 제74조(해지시 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에 따라 본 협약의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제 4 조 (해석)

① 본 협약에 있어서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본 협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등(이하 총칭하여 "법령" 이라 한다)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 등을 말하며, 본 협약 체결 후 개정 또는 다른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본 협약 상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본 협약을 해석할 때 표제는 무시된다.

④ 본 협약 상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 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으로 해석한다.

⑤ 사업시행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채권금융기관, 주무관청 기타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⑥ 본 협약 상 주무관청에 대한 언급은 주무관청이 그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 5 조 (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① 본 협약과 그에 언급된 별첨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②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시행령
3. 시설사업기본계획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본 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가칭)청람에듀빌주식회사를 본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 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수익. 다만, 본 사업시설의 수익실현은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주무관청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4.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5. 주무관청으로 부터 임대료 및 운영비의 수령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본 협약 체결일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경등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본 사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조달,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까지 대출약정서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시기를 연장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②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또는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권한과 시설자산(설비 및 지적재산 포함)의 귀속은 본 협약 제11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①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본 사업시설 전체가 준공된 이후 민간투자법 제26조,동법 시행령 제24조와 본 협약 제38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하고 임대가 개시되는 날부터 기산한다.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와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민간투자비)

① 본 사업의 총민간투자비는 금88,741,000,000원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04(총민간투자비)과 같다. [2차개정 2009. 03. 23]

② 제1항의 총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산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최초 실시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에 가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차개정 2009. 03. 23]

1. 정산주기 : 매분기

2. 정산대상 : 공사비의 물가변동분 및 이로 인한 건설이자 변동분, 단, 건설이자 변동분은 실제 추가 자금차입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3. 정산수준 : 최초 실시협약 재무모델에서 기반영 된 물가변동분을 상회(하회)하는 실제물가변동분중 확정금액의 50%

③ 제2항에 따라 총민간투자비를 조정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및 관련법령 등을 준용하여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차개정 2009. 03. 23]

제 13 조 (총민간투자비의 변경)

① 법시행령 제22조 3항 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민간투자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총민간투자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총민간투자비의 증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2.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민간투자비가 변동하는 경우
4. 법령(민간투자관련 법령, 조세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다)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6. 본 사업에서 총민간투자비는 전면책임감리비를 29억원(부가세 제외)으로 하여 포함한 금액으로서, 실제 전면책임감리 계약시 감리용역 계약금액 차액으로 인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1.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에 기재된 본 사업시설의 공사범위에 대한 변경(위치변경 포함)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이 증감되는 경우

2. 공사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본 사업시설의 기준, 본 사업 관련 업무처리 일반지침, 표준시방서, 정부제정 설계기준 및 지침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의 필요여부 및 설계변경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은 실시계획 승인시의 설계도서(수량산출서 포함)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1항 4호, 제2항 2호 사유 및 본 협약 제69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로 인한 본 협약 제70조(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에 따른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민간투자비 변경부분에서 제외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민간투자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민간투자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본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추진하며 재원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① 사업시행자는 출자예정자 또는 출자자로 하여금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 제출한 본 사업에 대한 투자확약서 등 제반 서류의 내용대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자본을 적기에 조달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 체결시 공사의 계획공정률을 반영한 자기자본의 투입일정은 별표05 (약정투자금 투입일정)와 같다.
③ 사업시행자는 재정지원금 투입 이전에 자기자본 전액을 선투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 제2항의 투입일정에 따라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의 자기자본으로 유지하면서 적기에 자기자본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채권금융기관 등과 본 사업 시행자간에 체결된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별표05(약정투자금 투입일정)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은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공사의 도급)

①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설계 또는 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회사(이하 "설계자" 라 한다), 시공회사(이하 "시공자" 라 한다)와 설계, 공사의 수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후 7일 이내 이를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본사업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수급인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급계약을 체결한 제1항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제 18 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법령의 규정과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설계를 위해 하도급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이하 "하수급인"라 한다)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법령 및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에게 본 사업시설의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9 조 (도급 ·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불노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급, 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1항의 체불 노

임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상의 정부지급금의 감액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 부터 면제될 수 없다.

④ 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약의 해지시 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계약 승계시에는 예외로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산정된 물가변동 정산분이 시공자(하수급인 포함)에게 귀속 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필요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차개정 2009. 03. 23]

제 20 조 (설계, 인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에 본 사업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질의답변서 등 포함), 사업계획서 및 [illegible]에 따라 본 사업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인.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관련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충남대학교의 경우에는 실시계획(1차) 승인신청전에 대덕연구단지 입주변경 승인,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밭대학교는 BTL 기숙사 부지의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본건 인·허가(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협상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은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협약 시 확인이 불가능한 세부사항은 실시설계시 별도 협의하여 반영한다.

제 21 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충남대학교의 경우 실시계획(1차)은 사업시행자 지정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실시계획(2차)은 90일 이내에 주무관청의 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계획서 및 본 협약,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법시행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계획서 및 본 협약,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그 신청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정하여 수정 [illegible] 15일 이내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기조달한 자금 또는 기투입한 투자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2 조 (공사기간)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 부터 630일로 한다.

② 제13조(총민간투자비의 변경)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

항의 공사의 착수시기를 조정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이 경우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지며, 주무관청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3 조 (공사의 착수)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민원발생,보상지연,설계변경,인허가 지연등 공사의 착공을 연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착공일을 결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계를 공사착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이 [illegible]도록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4 조 (공정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담팀으로 하여금 공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월 및 매분기 별로 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공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체 공정에 대한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착공일로부터 분기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의 공정률이 계획공정률 대비 90% 미만인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정계획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한다.

제 25 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 지하 위험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그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사항을 실시계획 신청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illegible]의무를 [illegible] 실시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해서는 제69조(불가항력사유 및 그 처리)에 따른다.

④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지장물의 이설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협약당사자들은 관련 인허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위험물의 제거 및 중화 또는 지장물 이설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련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6 조 (문화재)

① 사업시행자는 필요시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실시계획 신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 주무관청 또는 관련기관에 문화재 발견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재를 해할 수 있는 작업을 중지하고 문화재가 발견된 위치와 조건대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 발굴은 주무관청 및 관련기관의 감독 및 참여하에 수행되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문화재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문화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부분 외에 추가발생비용 및 공사기간의 처리는 본 협약 제69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른다.

제 27 조 (사업이행보증)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총민간투자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또는 본 사업시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내지 보증보험회사에 의한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하여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이 대표출자자 또는 설립예정법인 명의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설립 즉시 그 명의를 신규 설립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본 사업시설이 매수되는 경우,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주무관청이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사업이행보

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부하거나,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대체하여 주무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28 조 (지체상금)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은 총민간투자비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illegible] 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 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기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제 29 조 (보험가입)

①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험가입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별표07(보험가입계획)과 같이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의 법령위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주무관청에 손해가 없도록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수령사실 및 사용

내역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0 조 (업무감독 및 검사)

① 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로 하여금 건설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시공현장에서 직접 입회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 입회하에 본 사업시설의 건설상황, 품질관리, 성과수준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주무관청에 설명하여야 하며, 또한 주무관청의 필요시에도 설명을 요구할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에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반기별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는 검사의 방법,내용,시기에 대해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3항의 검사 결과,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건설되지 않거나 성과요구수준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 또는 공사감리자가 판단할 경우, 주무관청 또는 공사감리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제 31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기성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32 조 (민원처리)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음, 악취,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 등과 관련된 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③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민원으로서 주무관청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 결과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총민간투자비 중 보상비 항목에 추가 반영하기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 본 사업시설의 시공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한다.

⑤ 본 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illegible]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위배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배상금 등은 사업시행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제 33 조 (환경 및 안전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 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주무관청이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관련 법령에 따

라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34 조 (공사책임감리)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업체인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공사감리자와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의 부록 01(성과요구수준서)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책임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감리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현황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보고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0조 3항에 따른 검사, 제31조에 따른 기성검사, 제37조에 따른 예비준공검사, 제38조에 따른 완공검사 등을 주무관청의 감독하에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책임감리와 관련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공사감리자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금등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감리비는 주무관청에서 공사감리자 선정시에 낙찰된 금액으로 정산 처리후 총민간투자비를 변경한다.

제 35 조 (부속시설)

① 본 사업시설 중에서 부속시설로 추진되는 시설규모 및 범위는 별표08(부속시설)와 같다.

② 제1항의 부속시설은 실시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하여야 하며, 시설물설치에 따른 인허가 업무는 사업시행자 주관하에 시행토록 한다.

③ 제1항의 부속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 등 투자비는 제12조의 총민간투자비에 포함되어 산정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중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 발휘에 기여하고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을 절감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시행을 원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 36 조 (준공전 사용인가)

① 본 협약 제38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규정된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의 사용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전 사용인가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 협약 제38조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주무관청에 준공전 사용인가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준공전 사용인가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은 본 협약 제10조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산정은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상기 운영기간 동안 부록01(성과요구수준)의 성과요구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7 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①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을 완공하기 30일 전까지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사회기반시설 예비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 동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8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완공 후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 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공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직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완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에 완공검사의 일정을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완공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주무관청은 동 신청을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본 협약상의 건설에 관한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고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다.

④ 제2항의 준공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 및 성능의 확인을 위한 시운전(성능테스트)을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검사의 입회, 현장설명,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의 등록,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정부지급금의 결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준공확인 결과 본 협약 부록01(성과요구수준)의 성과요구수준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실시계획 승인시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반려하고, 구체적인 미비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려일로 부터 15일이내에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도록 보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도록 보수를 한 이후에 신속하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6 장 유지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9 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본 사업시설을 본 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본 시설의 운영비를 지급받기로 

③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 40 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 계약)

①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 계약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임대차 존속기간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주무관청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제1항의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를 위한 별도 방식의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일을 임대차 존속기간의 개시일로 하기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한 충남대학교 · 공주대학교 · 한밭대학교 · 공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관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사용범위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④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임대차 존속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이 개시되기 이전에 본 사업시설을 이러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제 41 조 (운영비의 결정 등)

① 제59조에 따라 산정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의 표준비용(2006년 7월 31일 기준 불변 운영비)은 금53,395,000,000원(부가세별도)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12(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쥴)과 같다. [2차개정 2009. 03. 23]

②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주무관청이 본 시설을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주무관청이 수행하는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전기료, 전화료, 수도료)은 주무관청이 부담한다.

제 42 조 (운영비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운영비의 5% 범위내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운영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운영비의 증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본 시설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여건 변화가 발생하여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서의 운영비 변경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변경을 통해 조정할수 있다.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2. 본 사업시설의 청소·보안경비
3. 본 사업시설의 환경위생관리
4.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5. 부속시설의 영업 등의 운영업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운영업무
7. 기타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한 사항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①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전문운영회사(이하 "운영자"라 한다)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후 즉시 이를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본 사업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제1항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수임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및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을 유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 규정에 의거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 3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사업년도가 개시되는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관련 법령의 변경등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제 46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본 협약 제46조의 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이 준공 당초 기능을 발휘하도록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로 하여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③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제8장(정부지급금 산정 및 지급)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시설의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이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

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59조(운영비의 산정)에 의하여 산정된 운영비중에서 별표18(대수선 및 수선충당금 적립계획)의 계획에 따라 대수선을 위한 수선충당금을 주무관청 명의의 별도계좌에 예치한다.

⑦ 제6항에 의하여 예치된 수선충당금은 본 시설의 대수선 발생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후 수선충당금의 미집행금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제 47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 운영)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속시설을 유지관리 · 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의 운영수입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속시설을 유지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시스템에 의한 부속시설의 관리 · 운영에 따른 매월의 비용, 수입내역과 증빙자료 등 운영실적을 다음 월의 10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운영실적이 정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을 확정한다.

④ 주무관청은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제2항의 운영실적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4항의 조사,확인 결과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운영실적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제52조의 성과평가위원회로 하여금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실적을 제4항의 조사,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조사하게 하여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을 확정한다.

⑥ 제5항의 재조사를 한 결과, 재조사한 운영실적에서의 순이익(A)이 별표09(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에 제시된 추정 운영순이익(C)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운영실적에서의 운영순이익(B)이 별표09(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에 제시된 추정 운영순이익(C)보다 적거나 이와 같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A- C)에 해당하는 순이익을 주무관청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부속시설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중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이 별표09(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에 제시된 추정 운영순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⑧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중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이 별표09(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에 제시된 추정 운영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0:50의 비율로 분배하여 수익한다.

⑨ 제35조 4항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시설을 유지 관리 · 운영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8항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 48 조 (경미한 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별도 협약체결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내용 및 소요비용과 예상수입, 사업추진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본 조 제1항의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및 수익의 배분 등의 사항은 제47조(부속시설의 유지관리 · 운영)의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 7 장 성과의 점검 · 평가

제 49 조 (성과의 측정 · 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에 입각하여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및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정확히 반영한 월·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월보고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분기보고서를 당해 분기 익월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분기의 경우 월보고서를 함께 제출)

② 성과의 측정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결과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였다는 사유로 인해 성과측정의 결과로부터 사업시행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 50 조 (성과의 점검)

① 주무관청은 제49조의 월보고서를 토대로 매월 본 사업시설의 성과수준을 확인하고, 성과수준이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하는 요구수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49조의 분기보고서를 토대로 매 분기마다 직전 분기의 성과이행상황을 검증하고, 본 협약에 규정된 성과요구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의 성과수준 확인과 제2항의 성과 이행상황 점검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성과점검을 위해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1. 전원장치 등 측정기기에 의한 측량
2. 샘플의 추출에 의한 검사
3. 시설의 현장에 대한 불시 검사
4. 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불만족 접수
5. 고객 만족도 조사 및 기타 주무관청의 필요사항

⑤ 주무관청은 제52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2항의 성과점검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등의 이유로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 51조 (성과의 평가)

① 주무관청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52조에 따라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제49조, 제50조에 따른 성과의 측정·보고 및 점검결과를 토대로 하여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시설이용자의 서비스만족도의 3개 분야에 대해 매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직전 분기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비스만족도 분야의 성과평가를 위해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기로

④ 제1항의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의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동 기관으로 하여금 본 협약에 따라 성과평가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성과의 평가항목과 기준은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른다.

제 52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주무관청은 제51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따른 운영이 개시되기 이전에 부록02(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각 대학별로 평가위원장과 본 사업시설의 주무관청 소속 공

무원 3명, 사업시행자측 3명, 본 사업시설의 학생대표 3명, 관련분야 전문가 3명등 13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사업시행자측 3명 제외)은 주무관청이 선임하기로 한다.

④ 성과평가위원의 구성 및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0:50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한다.

제 53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성과평가위원회는 부록02(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되 평가위원장은 성과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평가위원장과 평과위원 전원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③ 성과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협약의 체결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또는 기준 중에서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한하여 성과평가위원회 전원의 합의에 의해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54 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제51조에 따른 성과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과 부록03(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요령)에 따라 본 협약에서 결정된 당해 분기의 정부지급금(운영비)를 제8장(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② 본 장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내용에 허위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허위기재가 없었다면 감액 또는 미지급될 수 있었던 당해 분기의 운영비 상당액의 2배를 주무관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성과평가를 받은 분기의 다음 분기의 성과 평가시 총 평가등급이 A등급일 경우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과 부록03(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요령)에 따라 제1항에서의 감액금의 50% 이내에서 가산하여 정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④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과 부록03(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요령)에서 제시된 당해 분기의 총 평가등급을 C등급 이하로 평가받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합의한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연속하여 3분기 이상 제4항의 개선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주무관청은 제44조(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에서 정한 운영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운영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본 협약 제45조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 8 장 정부지급금의 [illegible]

제 55 조 (사업수익률의 산정)

① 본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지표금리에 가산율(0.87%)을 합산하여 산정되는 세전 경상사업수익률이며 협약체결시의 사업수익률은 5.83%이다. 다만, 본 협약체결시의 가산율은 본 조의 사업수익률 산정시 변경되지 아니한다.

② 임대개시시의 최초 사업수익률은 제3항의 지표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며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5년동안 적용된다.

③ 지표금리는 5년만기 국채수익률을 적용하되 제2항의 사업수익률 산정을 위한 지표금리는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일 직전 5영업일의 5년만기 국채수익률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사사오입한다.

④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회에 한하여 제56조에

따라 조정된 사업수익률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 56 조 (사업수익률의 조정)

① 사업수익률은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되는 날의 익일(이하 "조정기준일" 이라 한다.)에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가산율은 임대료 지급기간 중 변경되지 아니한다.

② 지표금리는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 57 조 (임대료의 산정)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최초 5년 동안(이하 "최초 임대료 적용기간" 이라 한다.) 매 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사업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 한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되는 날에 최초 임대료 적용기간에 지급될 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illegible]

② 임대료는 별표10(임대료 산정방법)의 원리금균등분할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별표09(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에서 제시된 부속시설의 매년도 순이익 추정치를 공제하여 본 사업시설 임대료를 산정한다.

③ 본 협약에 따른 총민간투자비 변경사유로 임대료 조정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임대료를 재산정하기로 한다.

④ 본 사업의 임대료 지급기간(본 사업시설 임대차 존속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⑤ 본 시설이 조기 준공되거나 준공전 사용인가 될 경우, 조기준공일 또는 준공전 사용인가일로 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58 조 (임대료의 조정)

① 임대료는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회에 한하여 제55조(사업수익률의 산정)에 따라 조정되는 수익률에 연동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매 임대료 적용기간 개시 후 매 5년이 되는 날의 익일을 조정기준일로 하기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의한 임대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매 조정기준일에 당해 임대료 적용기간 동안 지급될 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임대료는 조정기준일로 부터 5년간 적용된다.

제 59 조 (운영비의 산정)

본 협약에 따라 매 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는 제41조 제1항의 불변 운영비에 해당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실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 60 조 (운영비의 조정)

① 본 협약 별표13(본 시설의 수요)에서 제시한 본 시설에 대한 수요보다 실제 발생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운영비(변동비)의 증감부분을 감안하여 매 분기마다 운영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한다.

② 협약당사자간에 제1항의 조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약의 변경을 통해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한다.

제 61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①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최초 5년 동안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조정된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에게 매분기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임대개시 후 매 분기별로 제59조에 의해 산정된 운영비를 지급한다.

③ 최초 임대가 분기 도중에 개시될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당해 분기말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며, 임대기간이 분기 도중에 종료될 경우 임대기간의 마지막 분기의 초일로부터 임대 종료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 62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

① 사업시행자는 제61조에 따른 정부지급금중 임대료의 경우는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의 마지막월에 속하는 15일의 전일까지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청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분기 말일의 2영업일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단, 임대기간 종료시에는 임대기간 종료 마지막월에 속하는 15일의 전일까지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청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임대기간 종료 마지막월 말일의 2영업일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운영비는 매 분기마다 다음 분기 초일부터 15일까지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주무관청은 동 청구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② 주무관청이 본 협약에 따른 정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본 조에서 정한시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동 지급예정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금리(AA-)를 기준이자율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제 9 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제 63 조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본 사업에 대한 건설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64 조 (보상업무 등)

① 본 사업부지의 제공업무와 이와 관련한 지장물 보상 기타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은 주무관청에서 주무관청의 비용으로 본 사업의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기로 한다.

② 주무관청의 보상업무나 지장물 처리의 지연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협약 제10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 65 조 (주무관청의 비재정적 지원)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시공자 또는 운영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계관청에 대한 제반 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통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
2. 본 사업과 관련된 부지의 용도의 결정 및 통지
3. 기타 본 사업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66 조 (위험배분의 원칙)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 67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제72조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며, 본 협약 전체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단, 제3호,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유발생의 원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한다.

1. 실시계획 승인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사업시설에 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합병을 위한 경우 제외)
5. 제68조 및 제69조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재원(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조달·투입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4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8.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시를

1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1개월 이상 유지관리 및 운영을 기피하여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사업시행자가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본 협약에서 정한 성과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일정기간까지의 제54조 제1항에 따른 정부지급금의 감액총액이 그 기간까지의 주무관청이 지급한 정부지급금 총액의 50% 이상을 초과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하여는 총투자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68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제1호, 제2호[illegible]에 의하여 본 사업시설, 본 사업시행권에 대한 몰수

2.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보상업무, 지장물 처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3.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5. 본 협약에 정한 정부지급금이 본 협약에 따른 지급예정일보다 3개월이 경과할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본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제 69 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①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및 위험물이나 유물의 발견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3.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정책 혹은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사유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중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3.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환전 및 해외 [illegible]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③ 건설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민간투자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을 연기한다.
2. 총민간투자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민간투자비 증가분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의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부담한다.

나.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민간투자비 증가분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다. 위 '가' 호 및 '나' 호에서의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본 사업시설의 재조달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의 성격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각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있어 주무관청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임대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으로 당해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협약당사자에 의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임대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하여 주무관청 부담부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⑥ 주무관청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융자 또는 단기차입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제70조(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하며, 협의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유의 [illegible]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제 70 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청구내용을 적시하여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한다.

②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협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청구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협약 당사자에게 동 청구에 대한 이의의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불가항력 분쟁의 통지”)를 한다.

③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동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회되지 않을 경우, 동 분쟁은 제13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해결한다.

④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행하여지지 않거나 제3항에

서 정한 기간 내에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 정부 및 사업시행자 모두 불가항력 사유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⑤ 청구가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불가항력 사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71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② 본 협약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 1년 전에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포함한 관리운영권의 대상인 사업시설 전체를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2. 제1호에 따른 인계시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직후(1년 이내)에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4. 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할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는 별표14(관리운영권의 인계)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계한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

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운영 종료시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할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장비목록은 별표17(유지관리비품 및 장비무상인계목록)와 같이 한다.

제 72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 제67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67조 제1항 2호의 사유는 그로 인하여 본 사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부터 정부지원금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68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이 3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3. 제6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9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유물과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 지역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협약당사자가 자기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차입계약이 동 계약상의 기한 이전에 종료(또는 해지)되고 6개월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단, 동 사유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각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여타 권리에 부가하여,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와 법시행령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하여 본 사업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법시행령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에 따라 매수청구인정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주무관청의 매수청구인정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다.

⑤ 본 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illegible]를 전제로 하며, [illegible]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⑥ 본 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해지권자”)는 본 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이내의 기간(“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해지사유발생의 통지(“해지사유발생통지”)를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통지(“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78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한다.

제 73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74조(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 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해지시 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기준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제 74 조 (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별표15(해지시 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전문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이를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분담한다.

⑤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3장(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른다.

⑥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해지시지급금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 상당을 공제한다. 다만,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주무관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정부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75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① 제72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중의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종료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illegible]당사자의 계약을 주무관청이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주무관청에 대한 계약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취득, 인수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공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 및 점검을 수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 이전한다.

제 76 조 (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기간만료 또는 해지 시, 본 사업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주무관청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사업시행자와 협력한다.

② 본 협약의 종료는 기간만료일 또는 중도해지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기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협약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대방 당사자가 위반 당사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타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상대방 당사자는 계속하여 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집행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및 손해배상, 기타보상, 구제수단 또는 시정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어느 일방이 본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계속적인 또는 추후의 위반에 대한 당해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77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① 민간투자법 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 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에게 본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한다.

제 78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① 제72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사유 발생통지를 한 후 치유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어느 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기

한이익상실에 관한 통지를 한 경우, 채권금융기관(또는 대리은행)은 서면통지("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대체사업자를 주무관청에 추천할 수 있다.

②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추천된 대체사업자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한다.

③ 주무관청과 채권금융기관 및 수용된 대체사업자가, 주무관청의 대체사업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항에 언급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자금차입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사유의 시정을 위한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한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취소하는 서면통지("취소통지")를 보낼 수 있고, 정부 또한 대체사업자의 수용을 취소("수용취소")할 수 있다. 취소통지나 수용취소가 있는 경우, 또는 대체사업자가 본조 제2항에 따라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자는 선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당사자들의 권리는 마치 추천 통지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제 79 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인 (가칭)사랑에너넷주식회사의 예정출자자 구성 및 예정출자지분은 별표03(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과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 출자자의 비율변경, 출자자의 영입,기존 출자자의 탈퇴등 출자자 변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 지정이후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 또는 사업계획서 평가시 출자자 구성의 평가요소에 따라 별도의 배점을 부여받은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동일기업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양

도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 80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야 하며 자본구조 변경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81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①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협약 당사자간 이익 공유의 비율은 50:50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기준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 수익률에 대비하여「비교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하기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측 공유이익을 임대료 인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처리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본 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자금재조달 관련 세부지침 및 조건에 따른다.

제 13 장 분쟁의 해결

제 82 조 (분쟁의 해결)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본 협약 제83조(중재)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협약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④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 지급금액은 지급되어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83 조 (중 재)

①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부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을 위하여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되도록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② 중재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중재법 및 중재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 14 장 기타사항

제 84 조 (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을 통하여 사업수익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 85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6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주무관청은 자신이나 그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다.

제 87 조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 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과 본 협약상 또는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8 조 (묵시적 보증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당사자간의 기타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제 89 조 (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③ 본 조 제2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 90 조 (통지)

① 본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가. 충남대학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수신 : 충남대학교 총장
      참조 : 경리과장
      전화 : 042)821-5134 팩스 : 042)825-5132
   나. 공주대학교
      주소 :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수신 : 공주대학교 총장
      참조 : 경리과장
      전화 : 041)850-8095 팩스 : 041)850-8099
   다. 한밭대학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산16-1
      수신 : 한밭대학교 총장
      참조 : 총무과장
      전화 : 042)821-1042 팩스 : 042)821-1568
   라. 공주교육대학교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376
      수신 :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참조 : 총무과장
      전화 : 041)850-1295 팩스 : 041)854-1578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519번지
   수신 : (가칭)청람에듀빌주식회사
   참조 :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 이 시 구
   전화 : 042)480-7395 팩스 : 042)486-1630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약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통지는 협약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송달된 때"라 함은 우편인 경우는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91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92 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5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부칙(2009. [illegible])

① 이 개정 실시협약서는 협약당사자간 기명(기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5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주무관청

충남대학교 총장 송용호 송 용 호

공주대학교 총장 김재현 김재현

한밭대학교 총장 설동호 설 동 호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전우수 전 우 수

사업시행자

청람에듀빌주식회사 대표자 이 시 [illegible]

대전·충남지역 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2차개정 2009. 03. 23

별표01 본 사업의 개요
별표02 본 사업의 구조
별표03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별표04 총투자비 총민간투자비
별표05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별표06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별표07 보험가입계획
별표08 부속시설
별표09 부속시설의 운영 순이익
별표10 임대료 산정방법
별표11 임대료 및 지급스케쥴
별표12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쥴
별표13 본 시설의 수요
별표14 관리운영권의 인계
별표15 해지시지급금
별표16 재무모델(C/D)
별표17 유지관리비품 및 장비무상인계목록
별표18 대수선 및 수선충당금 적립계획

별표 1

본 사업의 개요

1.1 충남대학교

사 업 명	대전·충남지역 국립대학교 학생 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A지역)	
대지현황	대 지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일원
	지 역 / 지 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대 지 면 적	1,500,674.80㎡
용 도	공동주택(기숙사)	

구 분	시 설 개 요						
건축면적	4,954.64㎡						
연 면 적	48,389.35㎡						
건 폐 율	0.33%						
용 적 률	2.76%						
최고높이	53.68m						
건물규모	지하 1층 /지상 16층	사생실 규 모	지침	1,244실	기혼자실 규 모	지침	95실
공사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계획	1,252실 (장애우실14실)		계획	96실 (장애우실1실)
공사종별	증축						
주차대수	계획 : 247대(장애자용 10대 포함)						

1.2 공주대학교 신관

사 업 명	대전·충남지역 국립대학교 학생 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B-1지역)	
대지현황	대 지 위 치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공주대학교내
	지 역 / 지 구	자연녹지지역, 학교시설보호지구
	대 지 면 적	349,905.00㎡
용 도	공동주택(기숙사)	

구 분	시 설 개 요			
건축면적	1,698.82㎡			
연 면 적	19,226.05㎡			
건 폐 율	0.49%			
용 적 률	5.00%			
최고높이	47.8m			
건물규모	지하1층/지상16층	사생실 규 모	지침	550실, 1100인
공사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계획	526실, 1043인(장애우실 : 6실), (게스트룸 30실)
공사종별	증축			
주차대수	계획: 114대			

1.3 공주대학교 예산

사 업 명	대전·충남지역 국립대학교 학생 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B-2지역)	
대지현황	대 지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번지 공주대학교내
	지 역 / 지 구	자연녹지지역
	대 지 면 적	580,557.00㎡
용 도	공동주택(기숙사)	

구 분	시 설 개 요			
건축면적	873.32㎡			
연 면 적	4,110.37㎡			
건 폐 율	0.15%			
용 적 률	0.63%			
최고높이	24.7m			
건물규모	지하1층/지상6층	사생실 규 모	지침	100실, 200인
공사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계획	91실(장애우실 : 1실) ,(게스트룸 11실)
공사종별	증축			
주차대수	계획: 30대			

1.4 한밭대학교

사 업 명	대전·충남지역 국립대학교 학생 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C지역)	
대지현황	대 지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16-7번지
	지 역 / 지 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
	대 지 면 적	10,787㎡
용 도	공동주택(기숙사)	

구 분	시 설 개 요			
건축면적	2,437.93㎡			
연 면 적	11,210.07㎡			
건 폐 율	22.60%			
용 적 률	100%			
최고높이	31.16m			
건물규모	지하1층/지상10층	사생실 규 모	지침	300실, 600인
공사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계획	300실, 596인 (장애우실 : 4실)
공사종별	증축			
주차대수	계획 : 57대			

1.5 공주교육대학교(여)

사 업 명	대전·충남지역 국립대학교 학생 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D-1지역)	
대지현황	대 지 위 치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255-1번지
	지 역 / 지 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 지 면 적	2,031.00㎡
용 도	공동주택(기숙사)	

구 분	시 설 개 요			
건축면적	781.49㎡			
연 면 적	4,326.78㎡			
건 폐 율	38.48%			
용 적 률	193.01%			
최고높이	19.75m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6층	사생실 규 모	지침	125실, 250인
공사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계획	127실, 250인(장애우실: 2실)
공사종별	신축			
주차대수	계획 : 15대			

1.6 공주교육대학교(남)

사 업 명	대전·충남지역 국립대학교 학생 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D-2지역)	
대지현황	대 지 위 치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99번지
	지 역 / 지 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 (16m 이하 제한)
	대 지 면 적	2,255.00㎡
용 도	공동주택(기숙사)	

구 분	시 설 개 요			
건축면적	844.24㎡			
연 면 적	3,473.61㎡			
건 폐 율	37.45%			
용 적 률	138.75%			
최고높이	13.62m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사생실 규 모	지침	100실, 200인
공사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계획	102실, 201인 (장애우실: 1실)
공사종별	신축			
주차대수	계획: 13대			

별표 2

본 사업의 구조

1) 사업방식 : 민간투자시설사업중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사업의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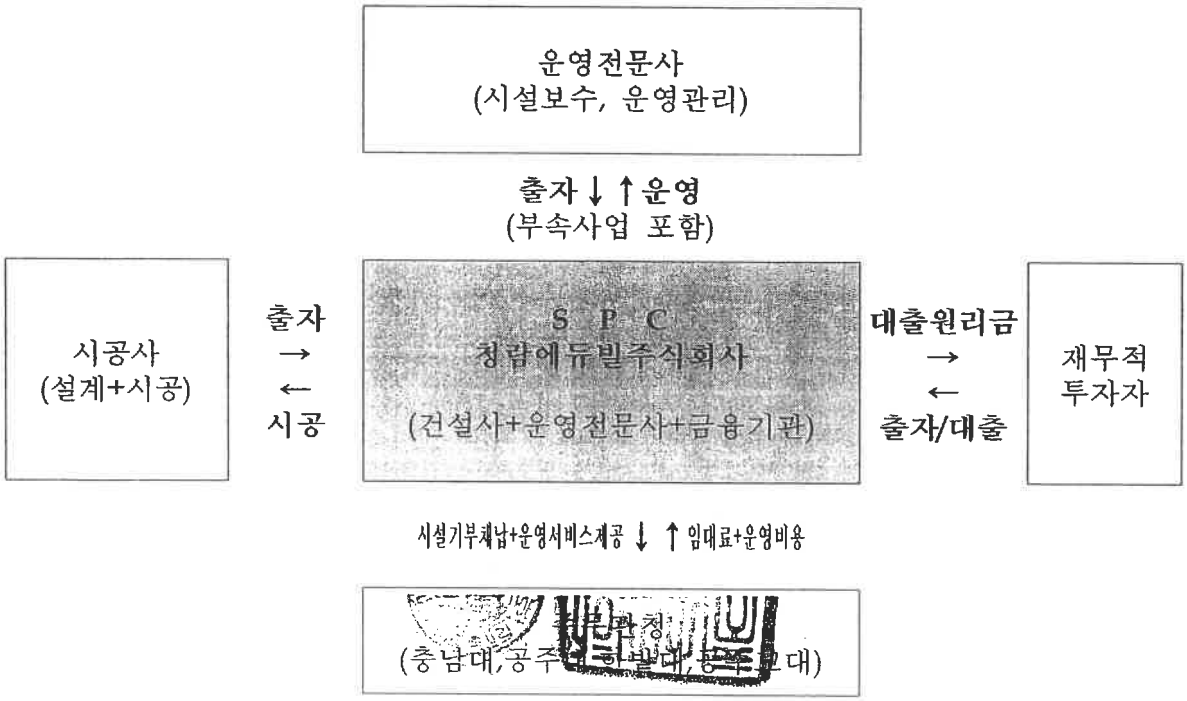

3) 본 사업의 당사자간에 정한 계약과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음.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1. 조사 및 설계, 관계기관과의 인·허가사항 업무수행	인·허가를 위한 행정지원
2. 차입계약 등 재원조달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사착수 및 공정관리	업무감독 및 기성검사 확인
4. 시설투자의 완료	준공검사 확인
5. 시설의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의 설정
6. 시설의 임대개시	시설의 임차개시
7. 유지관리 및 운영	시설의 사용
8. 성과의 측정 및 보고	성과의 점검 및 평가
9. 차입금 상환 및 배당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10. 관리운영권의 인계	관리운영권의 인수

별표 3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출자자명	출 자 지분율	총민간투자비 대비비율	구성원의 역할
한 국 교 육 투 융 자 회 사	26.0%	2.60%	재무적 투자자
한 국 산 업 은 행	10.0%	1.00%	
농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10.0%	1.00%	
동 부 화 재 해 상 보 험 (주)	10.0%	1.00%	
삼 성 화 재 해 상 보 험 (주)	10.0%	1.00%	
엘 아 이 지 손 해 보 험 (주)	10.0%	1.00%	
우 리 기 업 (주)	5.0%	0.50%	전문 운영사
계 룡 건 설 산 업 (주)	10.0%	1.00%	
계 룡 건 설 산 업 (주)	3.86%	0.39%	대표사, 시공사
우 석 건 설 (주)	1.91%	0.19%	건설사
대 국 건 설 산 업 (주)	1.11%	0.11%	
유 진 건 설 (주)	0.85%	0.09%	
금 성 건 설 (주)	1.27%	0.12%	
출자자수	**100.0%**	**10.00%**	

별표 4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총괄)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기준)

구 분	합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 조 사 비					
2. 설 계 비	3,139		3,139		
3. 공 사 비	74,753		12,494	61,970	289
4. 보 상 비	-				
5. 부 대 비	3,779		2,046	1,705	28
6. 운 영 설 비 비	4,199				4,199
7. 제 세 공 과 금	178				178
8. 영 업 준 비 금	89		63	24	2
9. 건 설 기 간 이 자	2,604		29	2,161	414
총투자비(A=∑1~9)	88,741		17,771	65,860	5,110
건 설 보 조 금 (B)	-				
총민간투자비(C=A-B)	88,741		17,771	65,860	5,110

별표 4-1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충남대)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기준)

구 분	합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 조 사 비					
2. 설 계 비	1,682		1,682		
3. 공 사 비	40,145		9,899	30,165	81
4. 보 상 비					
5. 부 대 비	2,033		1,188	832	13
6. 운 영 설 비 비	2,285				2,285
7. 제 세 공 과 금	6				6
8. 영 업 준 비 금	49		34	13	2
9. 건 설 기 간 이 자	1,399		16	1,161	222
총 투 자 비 (A = Σ 1 ~ 9)	47,599		12,819	32,171	2,609
건 설 보 조 금 (B)					
총 민 간 투 자 비 (C = A - B)	47,599		12,819	32,171	2,609

별표 4-1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공주대)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기준)

구 분	합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 조 사 비					
2. 설 계 비	818		818		
3. 공 사 비	19,023		2,595	16,323	105
4. 보 상 비					
5. 부 대 비	963		505	450	8
6. 운 영 설 비 비	1,086				1,086
7. 제 세 공 과 금	71				71
8. 영 업 준 비 금	23		16	6	1
9. 건 설 기 간 이 자	664		7	551	106
총투자비(A=∑1~9)	22,648		3,941	17,330	1,377
건 설 보 조 금 (B)					
총민간투자비(C=A-B)	22,648		3,941	17,330	1,377

별표 4-1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한밭대)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기준)

구 분	합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 조 사 비					
2. 설 계 비	374		374		
3. 공 사 비	8,858			8,818	40
4. 보 상 비					
5. 부 대 비	446		201	242	3
6. 운 영 설 비 비	502				502
7. 제 세 공 과 금	49				49
8. 영 업 준 비 금	11		7	3	1
9. 건 설 기 간 이 자	308		3	256	49
총 투 자 비 (A = Σ 1 ~ 9)	10,548		585	9,319	644
건 설 보 조 금 (B)					
총 민 간 투 자 비 (C = A - B)	10,548		585	9,319	644

별표 4-1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공주교대)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기준)

구 분	합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 조 사 비					
2. 설 계 비	266		266		
3. 공 사 비	6,729			6,666	63
4. 보 상 비					
5. 부 대 비	336		151	181	4
6. 운 영 설 비 비					325
7. 제 세 공 과 금	51				51
8. 영 업 준 비 금	8		6	2	
9. 건 설 기 간 이 자	232		3	193	36
총 투 자 비 (A = ∑ 1 ~ 9)	7,947		426	7,042	479
건 설 보 조 금 (B)					
총 민 간 투 자 비 (C = A - B)	7,947		426	7,042	479

별표 5

약정투자금 투입일정(총괄)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기준)

구 분	총민간투자비	자기자본	타인자본
계	88,741	8,874	79,867
2007년	17,772	8,874	8,898
1사분기			
2사분기	5,263	5,263	
3사분기	5,248	3,611	1,636
4사분기	7,261		7,261
2008년	65,860		65,860
1사분기	11,328		11,328
2사분기	19,151		19,151
3사분기	21,119		21,119
4사분기	14,262		14,262
2009년	5,109		5,109
1사분기	5,109		5,109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비 고			

별표 5-1

약정투자금 투입일정(충남대)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기준)

구 분	총민간투자비	자기자본	타인자본
계	47,599	6,929	40,670
2007년	12,820	6,929	5,891
1사분기			
2사분기	3,319	3,319	
3사분기	3,926	3,610	316
4사분기	5,575		5,575
2008년	32,170		32,170
1사분기	6,509		6,509
2사분기	9,613		9,613
3사분기	10,335		10,335
4사분기	5,713		5,713
2009년	2,609		2,609
1사분기	2,609		2,609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비 고			

별표 5-1

약정투자금 투입일정(공주대)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기준)

구 분	총민간투자비	자기자본	타인자본
계	22,648	1,087	21,561
2007년	3,942	1,087	2,855
1사분기			
2사분기	1,087	1,087	
3사분기	1,175		1,175
4사분기	1,679		1,679
2008년	17,330		17,330
1사분기	2,647		2,647
2사분기	5,134		5,134
3사분기	5,935		5,935
4사분기	3,614		3,614
2009년	1,377		1,377
1사분기	1,377		1,377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비 고			

별표 5-1

약정투자금 투입일정(한밭대)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기준)

구 분	총민간투자비	자기자본	타인자본
계	10,548	498	10,050
2007년	585	498	87
1사분기			
2사분기	498	498	
3사분기	83		83
4사분기	4		4
2008년	9,319		9,319
1사분기			1,297
2사분기	2,312		2,312
3사분기	2,996		2,996
4사분기	2,713		2,713
2009년	644		644
1사분기	644		644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비 고			

별표 5-1

약정투자금 투입일정(공주교대)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기준)

구 분	총민간투자비	자기자본	타인자본
계	7,947	360	7,587
2007년	426	360	66
1사분기			
2사분기	360	360	
3사분기	63		63
4사분기	3		3
2008년	7,041		7,041
1사분기	87		874
2사분기	2,092		2,092
3사분기	1,853		1,853
4사분기	2,221		2,221
2009년	479		479
1사분기	479		479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비 고			

별표 6

건설보조금 지급일정(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기준)

구 분	공 사 비	건설보조금	비 고
계	74,753		
2007년	12,494		
1사분기			
2사분기	1,038		
3사분기	4,419		
4사분기	7,037		
2008년	61,970		
1사분기	10,823		
2사분기	18,297		
3사분기	19,930		
4사분기	12,920		
2009년	289		
1사분기	289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별표 7

보험가입계획

○ 건설기간 중

구분	내 용
가입 보험	① 건설공사보험(제3자배상책임 포함) ② 예정이익상실보험 ③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보험 목적물	· 건설공사보험 : 공사 목적물, 공사용 자재, 가설공사 등에 입은 재물손해 및 제3자배상책임 · 예정이익상실보험 : 공사중 사고로 사업개시가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보장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SPC 운영인원에 대한 배상책임 (1인당 1억원/사고당2억원)
보험 금액	· 건설공사보험 : 공사비의 0.16% · 예정이익상실보험 : 운영개시후 1년간 고정성 비용(차입이자)의 0.40%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SPC 법인인건비의 0.10%

○ 운영기간 중

구분	내 용
가입 보험	① 화재보험 ② 기업휴지보험 ③ 영업배상책임보험 ④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보험 목적물	· 화재보험 : 시설물 준공가액 · 기업휴지보험 : 화재나 풍수해 및 기계적인 사고로 운영 중단시 이에 따른 수익감소 등의 손실 보상 · 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당 1억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포함) :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제3자의 피해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 보상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SPC 운영인원에 대한 배상책임 (1인당 1억원, 사고당 2억원)
보험 금액	· 화재보험 : 공사비의 0.04% · 기업휴지보험 : 고정비용(고정비+차입이자)의 0.06% · 영업배상책임보험 : 3백만원/학교당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SPC 법인인건비의 0.04%

별표 8

부 속 시 설(총괄)

(단위 : ㎡)

구분	내 용	시설 면적
충남대	식당, 매점, 세탁실,, 스카이라운지, 기타부속시설	3,488.25
공주대 신관	식당, 매점, 세탁실, 기타부속시설	1,030.67
공주대 예산	세탁실	26.16
한밭대	식당, 세탁실, 매점, 기타부속시설	819.04
공주교대 (여)	세탁실, 기타부속시설	79.91
공주교대 (남)	세탁실, 기타부속시설	87.12
부속시설 총면적		**5,531.15**

별표 8-1

부 속 시 설(실별)

(단위 : ㎡)

구 분	충남대	공주대		한밭대	공주교대		계
		신관	예산		여자	남자	
식 당	2,142.95	731.87		606.41			3,481.23
복 합 편 의 점	204.65	37.75		50.22	50.93	65.34	408.89
공 동 세 탁 실	286.72	79.72	26.16	102.29	28.98	21.78	545.65
스 카 이 라 운 지	240.44						240.44
스 낵 바	87.87			60.12			147.99
패 스 트 푸 드 외	171.96	99.5					271.46
서 점 / 문 구 외	119.38	61.37					180.75
치 킨 점	115.50	20.46					135.96
피 자 점	92.53						92.53
은 행 C D 기	26.25						26.25
합 계	3,488.25	1,030.67	26.16	819.04	79.91	87.12	5,531.15

별표 9

부속시설의 운영 순이익(총괄)

(단위 : 백만원, 2006년 7월 31일 경상가격기준, 부가세 별도)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1,019	130	294	296	299	
2010년	1,217	301	303	305	308	
2011년	1,254	310	312	315	317	
2012년	1,291	319	322	324	326	
2013년	1,330	329	331	334	336	
2014년	1,370	339	341	344	346	
2015년	1,411	349	351	354	357	
2016년	1,453	359	362	365	367	
2017년	1,497	370	373	376	378	
2018년	1,542	381	384	387	390	
2019년	1,588	393	396	398	401	
2020년	1,636	404	407	410	413	
2021년	1,685	417	420	423	426	
2022년	1,735	429	432	435	439	
2023년	1,787	442	445	448	452	
2024년	1,841	455	459	462	465	
2025년	1,896	469	472	476	479	
2026년	1,953	483	486	490	494	
2027년	2,012	497	501	505	509	
2028년	2,072	512	516	520	524	
2029년	293	293				
합 계	31,882	7,981	7,908	7,967	8,026	

별표 9-1

부속시설의 운영 순이익(충남대)

(단위 : 백만원, 2006년 7월 31일 경상가격기준, 부가세 별도)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840	107	242	244	246	
2010년	1,002	248	250	252	253	
2011년	1,032	255	257	259	261	
2012년	1,063	263	265	267	269	
2013년	1,095	271	273	275	277	
2014년	1,128	279	281	283	285	
2015년	1,162	287	289	292	294	
2016년	1,197	296	298	300	303	
2017년	1,233	305	307	309	312	
2018년	1,270	314	316	319	321	
2019년	1,308	324	326	328	331	
2020년	1,347	333	336	338	341	
2021년	1,388	343	346	348	351	
2022년	1,429	353	356	359	361	
2023년	1,472	364	367	369	372	
2024년	1,516	375	378	380	383	
2025년	1,562	386	389	392	395	
2026년	1,609	398	401	404	407	
2027년	1,657	410	413	416	419	
2028년	1,706	422	425	428	431	
2029년	241	241				
합 계	26,257	6,573	6,513	6,561	6,610	

별표 9-1

부속시설의 운영 순이익(공주대)

(단위 : 백만원, 2006년 7월 31일 경상가격기준, 부가세 별도)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114	15	33	33	34	
2010년	137	34	34	34	35	
2011년	141	35	35	35	36	
2012년	145	36	36	36	37	
2013년	149	37	37	37	38	
2014년	154	38	38	39	39	
2015년	158	39	39	40	40	
2016년	163	40	41	41	41	
2017년	168	42	42	42	42	
2018년	173	43	43	43	44	
2019년	178	44	44	45	45	
2020년	184	45	46	46	46	
2021년	189	47	47	47	48	
2022년	195	48	48	49	49	
2023년	201	50	50	50	51	
2024년	207	51	51	52	52	
2025년	213	53	53	53	54	
2026년	219	54	55	55	55	
2027년	226	56	56	57	57	
2028년	232	57	58	58	59	
2029년	32	32				
합 계	3,578	896	887	894	901	

별표 9-1

부속시설의 운영 순이익(한밭대)

(단위 : 백만원, 2006년 7월 31일 경상가격기준, 부가세 별도)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53	7	15	15	16	
2010년	63	16	16	16	16	
2011년	65	16	16	16	17	
2012년	67	17	17	17	17	
2013년	69	17	17	17	18	
2014년	71	18	18	18	18	
2015년	74	18	18	18	19	
2016년	76	19	19	19	19	
2017년	78	19	19	20	20	
2018년	80	20	20	20	20	
2019년	83	20	21	21	21	
2020년	85	21	21	21	22	
2021년	88	22	22	22	22	
2022년	90	22	23	23	23	
2023년	93	23	23	23	24	
2024년	96	24	24	24	24	
2025년	99	24	25	25	25	
2026년	102	25	25	26	26	
2027년	105	26	26	26	26	
2028년	109	27	27	27	28	
2029년	15	15				
합 계	1,661	416	412	415	418	

별첨 9-1

부속시설의 운영 순이익(공주교대)

(단위 : 백만원, 2006년 7월 31일 경상가격기준, 부가세 별도)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12	1	3	3	4	
2010년	14	4	4	4	4	
2011년	15	4	4	4	4	
2012년	15	4	4	4	4	
2013년	16	4	4	4	4	
2014년	16	4	4	4	4	
2015년	17	4	4	4	4	
2016년	17	4	4	4	4	
2017년	18	4	4	4	4	
2018년	18	4	5			
2019년	19	5	5	5	5	
2020년	19	5	5	5	5	
2021년	20	5	5	5	5	
2022년	20	5	5	5	5	
2023년	21	5	5	5	5	
2024년	22	5	5	5	5	
2025년	22	6	6	6	6	
2026년	23	6	6	6	6	
2027년	24	6	6	6	6	
2028년	24	6	6	6	6	
2029년	4	4				
합 계	375	94	93	94	94	

별표 10

임대료 산정방법

○ 시설임대료는 건설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3.0%)을 미리 고려하여 반영한 총민간투자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추가 물가변동분 포함)

○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5.83%)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 매분기말에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함

○ 매년 동일액 지급금(원리금 균분) 산정식

$$\text{시설 임대료} = \text{총민간투자비} \times \frac{\text{수익률}}{1-(1+\text{수익률})^{-(\text{임대기간})}}$$

○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최초 5년(“최초 임대료 적용기간) 동안 지급될 시설임대료는 제55조(사업수익률의 산정)에 따라 산정되는 최초 사업수익률(5.83%)을 반영하여 산정함.

○ 최초 임대료 적용기간 후의 시설임대료는 제56조(사업수익률의 조정)에서 정한 매 조정기준일에 조정된 사업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함.

별표 11

임대료 및 지급스케줄(총괄)

아래 표는 본 협약 체결시 사업수익률(5.83%)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임.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55조, 제56조(사업수익률의 산정 및 조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 분기별 임대료를 산출하여 지급함.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기준, 부가세 별도)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6,300	813	1,829	1,829	1,829	
2010년	7,318	1,829	1,829	1,829	1,829	
2011년	7,318	1,829	1,829	1,829	1,829	
2012년	7,318	1,829	1,829	1,829	1,829	
2013년	7,318	1,829	1,829	1,829	1,829	
2014년	7,318	1,829	1,829	1,829	1,829	
2015년	7,318	1,829	1,829	1,829	1,829	
2016년	7,318	1,829	1,829	1,829	1,829	
2017년	7,318	1,829	1,829	1,829	1,829	
2018년	7,318	1,829	1,829	1,829	1,829	
2019년	7,318	1,829	1,829	1,829	1,829	
2020년	7,318	1,829	1,829	1,829	1,829	
2021년	7,318	1,829	1,829	1,829	1,829	
2022년	7,318	1,829	1,829	1,829	1,829	
2023년	7,318	1,829	1,829	1,829	1,829	
2024년	7,318	1,829	1,829	1,829	1,829	
2025년	7,318	1,829	1,829	1,829	1,829	
2026년	7,318	1,829	1,829	1,829	1,829	
2027년	7,318	1,829	1,829	1,829	1,829	
2028년	7,318	1,829	1,829	1,829	1,829	
2029년	1,016	1,016				
합 계	146,357	36,589	36,589	36,589	36,589	

별표 11-1

임대료 및 지급스케줄(충남대)

아래 표는 본 협약 체결시 사업수익률(5.83%)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임.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55조, 제56조(사업수익률의 산정 및 조정)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 분기별 임대료를 산출하여 지급함.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기준, 부가세 별도)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3,380	437	981	981	981	
2010년	3,925	981	981	981	981	
2011년	3,925	981	981	981	981	
2012년	3,925	981	981	981	981	
2013년	3,925	981	981	981	981	
2014년	3,925	981	981	981	981	
2015년	3,925	981	981	981	981	
2016년	3,925	981	981	981	981	
2017년	3,925	981	981	981	981	
2018년	3,925	981	981	981	981	
2019년	3,925	981	981	981	981	
2020년	3,925	981	981	981	981	
2021년	3,925	981	981	981	981	
2022년	3,925	981	981	981	981	
2023년	3,925	981	981	981	981	
2024년	3,925	981	981	981	981	
2025년	3,925	981	981	981	981	
2026년	3,925	981	981	981	981	
2027년	3,925	981	981	981	981	
2028년	3,925	981	981	981	981	
2029년	545	545				
합 계	78,503	19,626	19,626	19,626	19,626	

별표 11-1

임대료 및 지급스케줄(공주대)

아래 표는 본 협약 체결시 사업수익률(5.83%)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임.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55조, 제56조(사업수익률의 산정 및 조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 분기별 임대료를 산출하여 지급함.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기준, 부가세 별도)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1,608	208	467	467	467	
2010년	1,868	467	467	467	467	
2011년	1,868	467	467	467	467	
2012년	1,868	467	467	467	467	
2013년	1,868	467	467	467	467	
2014년	1,868	467	467	467	467	
2015년	1,868	467	467	467	467	
2016년	1,868	467	467	467	467	
2017년	1,868	467	467	467	467	
2018년	1,868	467	467	467	467	
2019년	1,868	467	467	467	467	
2020년	1,868	467	467	467	467	
2021년	1,868	467	467	467	467	
2022년	1,868	467	467	467	467	
2023년	1,868	467	467	467	467	
2024년	1,868	467	467	467	467	
2025년	1,868	467	467	467	467	
2026년	1,868	467	467	467	467	
2027년	1,868	467	467	467	467	
2028년	1,868	467	467	467	467	
2029년	259	259				
합 계	37,352	9,338	9,338	9,338	9,338	

별지 11-1

임대료 및 지급스케쥴(한밭대)

아래 표는 본 협약 체결시 사업수익률(5.83%)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임.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55조, 제56조(사업수익률의 산정 및 조정)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 분기별 임대료를 산출하여 지급함.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기준, 부가세 별도)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749	97	217	217	217	
2010년	870	217	217	217	217	
2011년	870	217	217	217	217	
2012년	870	217	217	217	217	
2013년	870	217	217	217	217	
2014년	870	217	217	217	217	
2015년	870	217	217	217	217	
2016년	870	217	217	217	217	
2017년	870	217	217	217	217	
2018년	870	217	217	217	217	
2019년	870	217	217	217	217	
2020년	870	217	217	217	217	
2021년	870	217	217	217	217	
2022년	870	217	217	217	217	
2023년	870	217	217	217	217	
2024년	870	217	217	217	217	
2025년	870	217	217	217	217	
2026년	870	217	217	217	217	
2027년	870	217	217	217	217	
2028년	870	217	217	217	217	
2029년	121	121				
합 계	17,396	4,349	4,349	4,349	4,349	

별표 11-1

임대료 및 지급스케줄(공주교대)

아래 표는 본 협약 체결시 사업수익률(5.83%)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임.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55조, 제56조(사업수익률의 산정 및 조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 분기별 임대료를 산출하여 지급함.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기준, 부가세 별도)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564	73	164	164	164	
2010년	655	164	164	164	164	
2011년	655	164	164	164	164	
2012년	655	164	164	164	164	
2013년	655	164	164	164	164	
2014년	655	164	164	164	164	
2015년	655	164	164	164	164	
2016년	655	164	164	164	164	
2017년	655	164	164	164	164	
2018년	655	164	164	164	164	
2019년	655	164	164	164	164	
2020년	655	164	164	164	164	
2021년	655	164	164	164	164	
2022년	655	164	164	164	164	
2023년	655	164	164	164	164	
2024년	655	164	164	164	164	
2025년	655	164	164	164	164	
2026년	655	164	164	164	164	
2027년	655	164	164	164	164	
2028년	655	164	164	164	164	
2029년	91	91				
합 계	13,106	3,277	3,277	3,277	3,277	

별표 12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쥴(총괄)

(단위 : 백만원, 2006년 7월 31일 불변가격기준, 부가세 별도)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2,225	222	667	667	667	
2010년	2,670	667	667	667	667	
2011년	2,670	667	667	667	667	
2012년	2,670	667	667	667	667	
2013년	2,670	667	667	667	667	
2014년	2,670	667	667	667	667	
2015년	2,670	667	667	667	667	
2016년	2,670	667	667	667	667	
2017년	2,670	667	667	667	667	
2018년	2,670	667	667	667	667	
2019년	2,670	667	667	667	667	
2020년	2,670	667	667	667	667	
2021년	2,670	667	667	667	667	
2022년	2,670	667	667	667	667	
2023년	2,670	667	667	667	667	
2024년	2,670	667	667	667	667	
2025년	2,670	667	667	667	667	
2026년	2,670	667	667	667	667	
2027년	2,670	667	667	667	667	
2028년	2,670	667	667	667	667	
2029년	445	445				
합 계	53,395	13,349	13,349	13,349	13,349	

주) 1. 상기에서 산정된 매기 균등 일정액에 직전분기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

별표 12-1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충남대)

(단위 : 백만원, 2006년 7월 31일 불변가격기준, 부가세 별도)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995	100	299	299	299	
2010년	1,194	299	299	299	299	
2011년	1,194	299	299	299	299	
2012년	1,194	299	299	299	299	
2013년	1,194	299	299	299	299	
2014년	1,194	299	299	299	299	
2015년	1,194	299	299	299	299	
2016년	1,194	299	299	299	299	
2017년	1,194	299	299	299	299	
2018년	1,194	299	299	299	299	
2019년	1,194	299	299	299	299	
2020년	1,194	299	299	299	299	
2021년	1,194	299	299	299	299	
2022년	1,194	299	299	299	299	
2023년	1,194	299	299	299	299	
2024년	1,194	299	299	299	299	
2025년	1,194	299	299	299	299	
2026년	1,194	299	299	299	299	
2027년	1,194	299	299	299	299	
2028년	1,194	299	299	299	299	
2029년	200	200				
합 계	23,880	5,970	5,970	5,970	5,970	

주) 1. 상기에서 산정된 매기 균등 일정액에 직전분기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

별표 12-1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공주대)

(단위 : 백만원, 2006년 7월 31일 불변가격기준, 부가세 별도)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599	60	180	180	180	
2010년	719	180	180	180	180	
2011년	719	180	180	180	180	
2012년	719	180	180	180	180	
2013년	719	180	180	180	180	
2014년	719	180	180	180	180	
2015년	719	180	180	180	180	
2016년	719	180	180	180	180	
2017년	719	180	180	180	180	
2018년	719	180	180	180	180	
2019년	719	180	180	180	180	
2020년	719	180	180	180	180	
2021년	719	180	180	180	180	
2022년	719	180	180	180	180	
2023년	719	180	180	180	180	
2024년	719	180	180	180	180	
2025년	719	180	180	180	180	
2026년	719	180	180	180	180	
2027년	719	180	180	180	180	
2028년	719	180	180	180	180	
2029년	120	120				
합 계	14,379	3,595	3,595	3,595	3,595	

주) 1. 상기에서 산정된 매기 균등 일정액에 직전분기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

별표 12-1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한밭대)

(단위 : 백만원, 2006년 7월 31일 불변가격기준, 부가세 별도)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320	32	96	96	96	
2010년	384	96	96	96	96	
2011년	384	96	96	96	96	
2012년	384	96	96	96	96	
2013년	384	96	96	96	96	
2014년	384	96	96	96	96	
2015년	384	96	96	96	96	
2016년	384	96	96	96	96	
2017년	384	96	96	96	96	
2018년	384	96	96	96	96	
2019년	384	96	96	96	96	
2020년	384	96	96	96	96	
2021년	384	96	96	96	96	
2022년	384	96	96	96	96	
2023년	384	96	96	96	96	
2024년	384	96	96	96	96	
2025년	384	96	96	96	96	
2026년	384	96	96	96	96	
2027년	384	96	96	96	96	
2028년	384	96	96	96	96	
2029년	64	64				
합 계	7,673	1,918	1,918	1,918	1,918	

주) 1. 상기에서 산정된 매기 균등 일정액에 직전분기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

별표 12-1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공주교대)

(단위 : 백만원, 2006년 7월 31일 불변가격기준, 부가세 별도)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312	31	93	93	93	
2010년	373	93	93	93	93	
2011년	373	93	93	93	93	
2012년	373	93	93	93	93	
2013년	373	93	93	93	93	
2014년	373	93	93	93	93	
2015년	373	93	93	93	93	
2016년	373	93	93	93	93	
2017년	373	93	93	93	93	
2018년	373	93	93	93	93	
2019년	373	93	93	93	93	
2020년	373	93	93	93	93	
2021년	373	93	93	93	93	
2022년	373	93	93	93	93	
2023년	373	93	93	93	93	
2024년	373	93	93	93	93	
2025년	373	93	93	93	93	
2026년	373	93	93	93	93	
2027년	373	93	93	93	93	
2028년	373	93	93	93	93	
2029년	62	62				
합 계	7,463	1,866	1,866	1,866	1,866	

주) 1. 상기에서 산정된 매기 균등 일정액에 직전분기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

별표 13

본 시설의 수요

● 본 시설의 수요는 충남대, 공주대, 한밭대, 공주교대의 기숙사실 및 사실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함.

구 분	사업지	수용인원(명)	실 수	비 고
충 남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2,490	1,252실	
		192	96세대	기혼자용
공 주 대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986	496실	
		57	30실	기혼자용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	159	80실	
		20	11실	기혼자용
한 밭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16-7전	596	300실	
공주교대	충남 공주시 금학동 255-1	250	126실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9	201	101실	
합 계		**4,951**	**2,492**	**기혼자용 포함**

(주) 장애우실 포함한 수요임.

별표 14

관리운영권의 인계

□ 관리운영권 인계

- 사업시행자는 무상 사용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주무관청(충남대,공주대,한밭대,공주교대)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운영권을 인계함.
- 시설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관리운영권의 인계 이전에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등을 무상 사용기간 종료시 무상으로 주무관청(충남대,공주대,한밭대,공주교대)에 인계함.

- 시설운영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무상으로 주무관청(충남대,공주대,한밭대,공주교대)에 인계함.
- 무상으로 인계할 각종 운영·유지 장비 등의 범위는 사업시행자 지정시 주무관청(충남대,공주대,한밭대,공주교대)과 사업시행자간에 협약으로 결정함.

별표 15

해 지 시 지 급 금

□ 해지시 지급금 산정 기준

○ 건설기간 중에는 기투입된 민간투자자금(민간투자비,건설이자)을 기준으로 해지시 지급율 산정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금액은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한다.

○ 운영기간 중에는 잔여기간의 임대료의 현재가치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한다.

※ 해지시 지급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주무관청이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분	건 설 기 간	운 영 기 간
사 업 자 귀 책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비) - (해지시 기투입 납입자본금)	(잔여기간의 임대료를 해지시 적용된 수익률[3]로 할인한 현재가치) - (납입자본금) = C
비정치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A^{1}]	C + (D-C)×1/3
정 치 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A+B)/2]	C + (D-C)×2/3
주무관청 귀 책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B^{2}]	잔여기간의 임대료를 해지시 적용된 수익률[4]로 할인한 현재가치 = D

1」 실시협약에서 정한 [지표금리]
2」 실시협약에서 정한 [지표금리+[가산율]
3」, 4」 해지 당시 시설임대료 계산시 적용된 [지표금리+가산율]

별표 16

재 무 모 델

○ 대전 · 충남지역 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협약 재무모델 전자파일을 CD-ROM으로 별첨함.





■ 충남대학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가. 본시설집기비품				
1. 사생실(2인1실)				
침대	2000*1000*860	EA	2,476	
책상(책꽂이,서랍포함)	1200*750*1736	EA	2,476	
의자	430*450*670	EA	2,476	
옷장	750*650*1860	EA	2,476	
커튼	1600*1400	EA	1,238	
신발장	800*350*2300	EA	1,238	
2. 사생실(장애인실)				
침대	2000*1000*860	EA	14	
책상(책꽂이포함)	1200*750*1736	EA	14	
의자	430*450*670	EA	14	
옷장	750*650*1860	EA	14	
사이드테이블	650*250*400	EA	14	
커튼	1600*1400	EA	14	
신발장	600*350*2300	EA	14	
3. 사생실(기혼자실)				
침대	2000*1000*860	EA	96	
책상(책꽂이포함)	1200*750*1736	EA	192	
의자	430*450*670	EA	192	
옷장	1400*650*1860	EA	96	
TV테이블장	1800*600*420	EA	96	
사이드테이블	300*500*400	EA	192	
냉장고	200L	EA	96	
씽크대	1400*600*2200	EA	96	
커튼	2700*2100	EA	96	
신발장	800*350*2300	EA	96	
전기렌지		EA	96	
4. 사감실				
침대	2000*1000*860	EA	6	
책상(책꽂이포함)	1200*750*1736	EA	6	
의자	430*450*670	EA	6	
옷장	750*650*1860	EA	6	
커튼	1600*1400	EA	6	
신발장	800*350*2300	EA	6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4. 관리사무실				
사무용책상	1300*650*750	EA	13	
의자	430*450*670	EA	13	
소파	1680*810*900	EA	3	
탁자	810*520*440	EA	3	
6. 휴게실				
TV	21"	EA	33	
쇼파	1500*650*720	EA	99	
탁자	700*500*420	EA	99	
7. PC실				
책상	1200*750*700	EA	41	
의자	430*450*670	EA	41	
PC	DELL(P-4)44	EA	41	
8. 독서실				
독서용책상(칸막이포함)	1200*700*720	EA	102	
의자	400*420*760	EA	102	
9. 세미나실				
회의용탁자	1500*750*750	EA	20	
의자	430*450*670	EA	40	
이동식화이트보드	2000*1000*1820	EA	4	
스크린	3000*2500	EA	4	
10.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EA	7	
헬스싸이클		EA	7	
벤치프레스		EA	2	
트위스트		EA	2	
체중계		EA	2	
벨트마사지		EA	3	
스트레칭매트	1800*900	EA	2	
나. 부속시설집기비품				
식탁4인용	원형 A	EA	12	
식탁4인용	원형 B	EA	8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식탁4인용	H:750 A	EA	28	
식탁4인용	H:750 B	EA	5	
식탁6인용	H:750	EA	143	
식탁의자	420*420*750	EA	990	
붙박이테이블	1440*700	EA	1	
붙박이테이블	2000*700	EA	1	
붙박이테이블	2500*700	EA	1	
붙박이테이블	3330*700	EA	1	
붙박이테이블	3370*600	EA	1	
붙박이테이블	3730*700	EA	1	
붙박이테이블	3860*700	EA	1	
붙박이테이블	4450*600	EA	1	
붙박이테이블	4880*600	EA	1	
소파	2인용	EA	6	
스툴	L:4880	EA	28	
의자	원목A	EA	48	
의자	원목B	EA	32	
TV	40"	EA	3	
에어커튼	900*190*220	EA	14	
유인포충등	INSECT INN ULTRA	EA	5	
전자저울	150KG	EA	1	
검수대/하부선반	900*750*850	EA	1	
옷건조기	SK8100-	EA	1	
앞치마위생살균건조기	SK8100-2	EA	3	
소독발판대	1500*750*15	EA	5	
다단식선반	1200*750*1800	EA	2	
냉장고	LD-1140R	EA	1	
칼도마소독기	SK 1350	EA	2	
손소독기	(센서형)	EA	1	
손세정대	(페달식)	EA	1	
핸드드라이기	-	EA	6	
릴호스	스텐 15M	EA	7	
창고선반	1500*600*1800	EA	9	
엘형운반차	900*600*1100	EA	1	
다단식선반	1500*600*1800	EA	1	
급,배기후드,휠타/방폭등	2500*1500*600	EA	1	
가스낮은렌지	700*750*450	EA	1	
스팀회전식국솥	250L	EA	6	
1조세정대/하부선반	1500*750*850	EA	3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작업대/하부선반	1500*750*850	EA	10	
이동작업대/하부선반	1200*600*850	EA	3	
이동식무침대	1200*600*850	EA	2	
작업대/하부찬장	1500*750*850	EA	5	
야채절단기	HMV-200	EA	1	
양념분쇄기	M-22S	EA	1	
2조세정대/하부선반	1500*900*850	EA	1	
1조세정대/하부선반	1200*750*850	EA	1	
보존식냉장고	SRD231IN	EA	1	
다단식선반	1500*750*1800	EA	4	
조립식냉동실	2600*3300*2400	EA	1	
조립식냉장실	3500*3300*2400	EA	1	
조립식김치냉장실	2200*3300*2400	EA	1	
냉동냉장실선반	1500*600*1800	EA	11	
행주소독기	SK2200	EA	1	
고무장갑살균건조기	SK3000	EA	3	
삶는세탁기	통돌이	EA	2	
곡물받침대	1100*1100*140	EA	3	
세미기(초음파식)	40Kg / MO300	EA	1	
세미세정대	1800*900*800	EA	1	
밥솥운반차	900*600*1100	EA	2	
1조세정대/하부선반	1500*900*850	EA	2	
급,배기후드/방폭등	2000*1200*600	EA	1	
가스자동밥솥	RRA-155		11	
급,배기후드/방폭등	3450*1200*600		2	
급,배기후드,휠타/방폭등	3400*1500*600		3	
가스회전식국솥	250L		2	
다단식선반	1800*750*1800		1	
제빙기(큐브형)	S-450/B-570		1	
급,배기후드,휠타/방폭등	3400*1900*600		1	
가스낮은렌지	1500*750*450		1	
가스높은렌지/하부선반	1500*750*850		1	
가스부침기/하부선반	1500*750*850		2	
급,배기후드,휠타/방폭등	1700*1500*600		2	
급,배기후드,휠타/방폭등	3000*1500*600		1	
콤비스티머(정수기)	AOS102EA		2	
자외선소독고	1000*430*1350		3	
양문형소독고(유리문)	LP-1020HD-2G		2	
양문형냉장고(상하유리문)	LP-1040R-4G		2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양문형온장고(상하유리문)	LP-1040H-4G		4	
전기식국보온운반차	600*600*800		9	
1조세정대/하부선반	900*750*850		1	
국그릇디스펜서	600*600*850		4	
국배식대	1200*700*800		5	
보온및상온배식대/하부찬장	1500*700*850		6	
밥보온배식대/하부찬장	700*700*850		5	
소독발판대	1000*600*15		3	
수저식판배분대	900*600*1100		7	
식판미끄럼대	3400*250*250		3	
추가배식대	1500*1200*850		4	
양문형냉장고(상하유리문)	LP-1040R-4G		2	
컵회수차	750*600*850		2	
냉온음용수대/컵찬장	SH-1900 CK		2	
담금세정대	3000*1200*900		1	
퇴식콘베어(ㄱ자형)	9650(2150)*600*900		1	
살수식잔반처리대	2500*350*850		1	
잔반균절기/탈수기	MWP-502		1	
이중잔반통	Ø480*600		2	
수저저분회수차(콘베어용)	720*600*450		4	
퇴식구방음칸막이(STS)	6100*550*1200		1	
낮은선반(STS)	1500*600*300		1	
이동식기건조대	1200*600*850		2	
배기후드/박스형(세척기용)	2800*1900*600		1	
배기후드/박스형(세척기용)	1500*1900*600		1	
자동식기세척기(WIDE)	3Tank/Dry(에너지효율장치)		1	
이동세정대	1500*900*850		1	
급,배기후드,휠타/방폭등	1500*900*600		1	
열탕소독기	1200*750*850		1	
전기식기소독고	LHD-1020LG		4	
파이프형벽선반	2800*300*250		1	
급,배기후드,휠타/방폭등	2900*1000*600		1	
가스다열렌지	1500*700*850		1	
가스낮은렌지	1300*700*450		1	
1조세정대/하부선반	1200*750*850		1	
밥보온배식대/하부찬장	1300*700*850		1	
양문형온장고(상하유리문)	LP-1040H-4G		1	
급,배기후드/방폭등	2000*1200*600		1	
급,배기후드,휠타/방폭등	1750*1200*600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컵회수차	600*600*850		1	
음수대	1200*650*500		1	
냉온정수기	BY-OTHER		1	
자외선소독고	500*410*750		1	
식판회수트롤리/찬장형	700*600*1700		3	
손소독기(건전지식)	140*270*240		9	
주방용운반차	700*500*850		1	
접시워머	1350*600*850		1	
베인마리	1200*800*850		1	
냉장테이블	1200*600*850		1	
벽찬장	1475*400*600		2	
가스튀김기	600*700*850		1	
보조대/하부로라	700*700*850		1	
가스자동밥솥	*50인용*		1	
배기후드/유지망/방폭등	1300*800*600		1	
냉동냉장고	1260*800*1907		1	
2-조세정대	900*700*850		1	
가스렌지	900*700*850		1	
가스부침기	500*700*850		1	
가스그릴러	500*700*850		1	
배기후드/유지망/방폭등	2100*800*600		1	
보조대	750*700*850		2	
제빙기	633*506*850		1	
냉장테이블	1500*600*850		1	
바믹서	*908*		1	
블렌더믹서	*915*		1	
바씽크	1200*600*850		1	
2-조세정대	1200*600*850		1	
작업대/찬장	1100*600*850		1	
커피머쉰	350*555*668		1	
컵워머	@420***610		1	
냉장쇼케이스	600*590*1600		1	
전처리세정대	2100*700*850		1	
잔반통(이중)	@480***600		1	
벽부착랙선반	1100*520*450		1	
전처리샤워기	*B-109/B-112*		1	
자동식기세척기	*DOOR TYPE*		1	
배기후드	800*800*600		1	
식기건조대	900*700*850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벽부착랙선반	800*520*450		1	
다단식선반	700*700*1800		1	
창고선반	1200*600*1800		1	
엘형운반차	900*600*850		1	
전자렌지	*MM-M301*		1	
다리미			2	
다림판	제작품		1	
다. 시설장비및공구				
RPM 측정기	HT-4100 (60~2000RPM)		1	
마노메타	POP-603(0~1KGf/㎠)		1	
디지털 온도계	KM-330(-50~1300℃)		1	
적외선 온도계	비접촉식 KM-826(-20~500℃)		1	
가스누설 탐지기	후레온용		1	
방수 유량계	0~15kg/㎠		1	
다이알 게이지	1/100~1/10mm, 베이스부		1	
메니폴드 게이지	호수포함 세트		1	
조도계(디지털)	YEW-3218A, 3000LUX		1	
후크메타 (아나로그)	HIOK-3127		2	
디지털 테스타기			1	
절연저항 측정기	1500V/2000MΩ		1	
접지테스타기 및 공구	YEW-3235		1	
차동식감지기 시험기	SL-H-[illegible], 신라		1	
연기식감지기 시험기	SL-S-119, 신라		1	
멀티테스타기	YEW-2411		1	
검전기 (특고압)	2000~25000V		1	
검전기 (저 압)	AC 80~7000V		1	
활선접근경보기 (특고압)	22.6KV/110CM		1	
벤치드릴머신	SMD 410		1	
고속 절단기	TCH-405T		1	
전기 용접기	380/220V, 10KW		1	
홀다용 전선	38 SQmm, 60M		1	
리드용 전선	8 SQmm, 60M		1	
알미늄 사다리	A형, 2.0M		1	
알미늄 사다리	A형, 1.5M		1	
알미늄 사다리	A형, 1.0M		1	
알미늄 사다리	AH형, 3.0M		1	
공기 압축기	2HP, 200V		1	
스프레건	7호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공기압축기 호스	50M, 3SP		1	
휴대용 전기드릴	SDG-10NV		1	
휴대용 전기드릴	SDG-13		1	
전기브로와	TDG 5608A		1	
마이크로폰	PM-30		1	
운반기	600W×4501		2	
임펙트드릴	TDP-10RV		1	
전기핸드그라인더	TGH-6BA		1	
휴대용디스크그라인더	TGC100SA, 100mm		1	
진공청소기	V1500		1	
체인블록 (호이스트)	1톤		1	
소형변압기	220V/110V, 2KVA		1	
타정건	HILTI, DX450		1	
함마드릴	HILTI, TE24		1	
탁상전기그라인더	TGB 205EA		1	
휴대용 전기충전 드릴	DD-6		1	
휴대용 전기충전 드릴	DD-10		1	
권총인두	220V/110V		1	
주철 정반	600X450X80, 2급(0.016)		1	
작업대	600x1,800		1	
파이프 바이스	RIDGID, 3-2 1/2"		1	
각형 바이스	6"		1	
가스 용접기	중형+화구(6개)		1	
가스 절단기	대형+화구(1개)		1	
조정기	산소, LPG		2	
역화 방지기	산소용		1	
산소용 호스	KS 8mmx2Bx100M		1	
아세칠렌 호스	KS 8mmx1Bx100M		1	
산소용기 운반기	산소, LPG용기용		1	
산소통	40리터		1	
LPG통	20리터		1	
압력계	산소용접기, 100A		2	
박스오픈렌치	10~32mm		1	
박스오픈렌치	3/8~11/4"		1	
소켓렌치	미리 24PCS		1	
소켓렌치	인치 24PCS		1	
조종렌치	18"		1	
동파이프 용접기	YC 국산		1	
파이프 머신	1/2~2"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하수구 청소기	K-38(19~64mm)		1	
휴대용 하수구 청소기	11KG이상		2	
동파이프 커터	1/8~2 ″		1	
동관 확관기	3/8~1 ″		1	
PULLER (조)	8 ″		1	
PULLER (조)	10 ″		1	
PULLER (조)	12 ″		1	
PULLER (조)	14 ″		1	
파이프렌치	36 ″		1	
파이프렌치	24 ″		1	
파이프렌치	18 ″		1	
파이프렌치	14 ″		1	
파이프렌치	12 ″		1	
파이프렌치	10 ″		1	
파이프렌치	8 ″		1	
수평기	300mm		1	
그리스펌프기	동력식		1	
그리스건	수동		2	
몽키스패너	KS 4 ″		1	
몽키스패너	KS 6 ″		1	
몽키스패너	KS 8 ″		1	
몽키스패너	KS 10 ″		1	
몽키스패너	KS 12 ″		1	
몽키스패너	KS 15 ″		1	
몽키스패너	KS 18 ″		1	
양구스패너	KS 6본		1	
양구스패너	KS 8x9		1	
양구스패너	KS 12x14		1	
플라이어	KS 6 ″		1	
플라이어	KS 8 ″		1	
플라이어	KS 10 ″		1	
렌치	KS 6PCS		1	
쇠톱틀	중품		2	
외측마이크로메타	25~50mm		1	
내측마이크로메타	5~30mm		1	
버니어캘리퍼스	300mm		1	
스크류 피치게이지	미리용		1	
튜빙카타	RIDGID 1/4″ ~21/4″		1	
디스콘봉	중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케이블카타	1.5~1.25SQ, LOBSTER		1	
튜브벤다	RIDGID 3/8"		1	
튜브벤다	RIDGID 1/4"		1	
터미널 압착기	1.25~14SQ LOBSTER		1	
터미널 압착기	1.25~8.0SQ LOBSTER		1	
유압터미널 압착기	14~325SQ		1	
파이프 벤더	1/2~3/4		1	
파이프 벤더	1~11/4		1	
휴대용 가스인두	KOTELYZ, 90AUTO, 80A		1	
휴대용 전기대패	CHP-315		1	
석재용 전기드릴	TDI-10KV		1	
유리 압축기	120KG		1	
리벳 건	2.5/3.2/4.0/4.8 A		1	
코킹 건	200mm		1	
양날톱	300mm		2	
대패			2	
평끌	12mm 기준		3	
목공바이스	100x200x300		1	
빠루방치	대형		1	
목수망치	중형		3	
토치램프	석유용, 2리터		1	
라. 보안장비				
무전기			8	
가스분사기			4	
휴대용소화기			4	
순찰시계			4	
교통신호봉			4	
방독면			6	
충전식라이트			4	
마. 미화장비				
진공청소기			1	
고압세척기			1	
청소용 카트			4	
고압호스			15	
알루미늄사다리			1	
쓰레기 압축기			1	

■ 공주대학교(신관)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가. 본시설집기비품				
1. 사생실(2인1실)				
침대	2000*1000*860	EA	980	
책상(책꽂이포함)	1200*750*1736	EA	980	
의자	430*450*670	EA	980	
옷장	750*650*1860	EA	980	
커튼	1600*1400	EA	490	
신발장	800*350*2300	EA	490	
2. 사생실(장애인실)				
침대	2000*1000*860	EA	6	
책상(책꽂이포함)	1200*750*1736	EA	6	
의자	430*450*670	EA	6	
옷장	750*650*1860	EA	6	
사이드테이블	650*250*400	EA	6	
커튼	1600*1400	EA	6	
신발장	600*350*2300	EA	6	
3. 사생실(기혼자 1인1실)				
침대	2000*1000*860	EA	3	
책상(책꽂이포함)	1200*750*1736	EA	3	
의자	430*450*670	EA	3	
옷장	1400*650*1860	EA	3	
TV테이블장	1800*600*420	EA	3	
사이드테이블	300*500*400	EA	3	
냉장고	200L	EA	3	
씽크대	1400*600*2200	EA	3	
커튼	2700*2100	EA	3	
신발장	800*350*2300	EA	3	
전기렌지		EA	3	
4. 사생실(기혼자 2인1실)				
침대	2000*1000*860	EA	54	
책상(책꽂이포함)	1200*750*1736	EA	54	
의자	430*450*670	EA	54	
옷장	1400*650*1860	EA	54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TV테이블장	1800*600*420	EA	27	
사이드테이블	300*500*400	EA	54	
냉장고	200L	EA	27	
씽크대	1400*600*2200	EA	27	
커튼	2700*2100	EA	54	
신발장	800*350*2300	EA	27	
전기렌지		EA	27	
5. 사감실				
침대	2000*1000*860	EA	2	
책상(책꽂이포함)	1200*750*1736	EA	2	
의자	430*450*670	EA	2	
옷장	750*650*1860	EA	2	
커튼	1600*1400	EA	2	
신발장	800*350*2300	EA	2	
6. 관리사무실				
사무용책상	1300*650*750	EA	13	
의자	430*450*670	EA	13	
소파	1680*810*900	EA	2	
탁자	810*520*440	EA	2	
7. 휴게실				
TV	21"	EA	7	
휴게용의자	1500*650*720	EA	25	
탁자	700*500*420	EA	25	
8. PC실				
책상	1200*750*700	EA	20	
의자	430*450*670	EA	20	
9. 독서실				
독서용책상(칸막이포함)	1200*700*720	EA	24	
의자	400*420*760	EA	24	
10. 세미나실				
회의용탁자	1500*750*750	EA	10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의자	430*450*670	EA	20	
이동식화이트보드	2000*1000*1820	EA	2	
스크린	3000*2500	EA	2	
11.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EA	10	
헬스싸이클		EA	4	
벤치프레스		EA	2	
트위스트		EA	2	
체중계		EA	2	
벨트마사지		EA	3	
스트레칭매트	1800*900	EA	4	
나. 부속시설집기비품				
식탁6인용	1800*800*720		96	
식탁4인용	1200*800*700		1	
식탁의자	420*420*760		574	
TV	40"		1	
수저및식판배분대	900*600*1100		2	
밥배식대	700*700*850		2	
반찬보온배식대	900*700*850		2	
반찬상온배식대	700*700*850		2	
국및국그릇거치대	1450*700*850		2	
전기식국보온운반차	550*600*800		2	
국그릇디스펜서	600*600*800		2	
자외선칼,도마소독고	1100*480*1300		1	
냉동냉장고	1500*750*1900		1	
이동작업대	1200*600*850		2	
발판소독기	900*400*20		3	
워터릴	*15M*		2	
페달식손세정대	330*470*840		1	
손소독기	250*250*350		1	
저울	*150 kg*		1	
창고선반	1500*750*1800		4	
곡물깔판	1100*600*50		1	
엘형운반차	900*600*850		1	
냉동냉장고	1500*750*1900		2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냉동냉장고	1500*750*1900		1	
다단식선반	1200*750*1900		1	
가스자동밥솥	*150 인용*		4	
배기후드/유지망	2000*1100*600		2	
가스회전식국솥	*250L*		4	
배기후드/유지망	1800*1300*600		1	
2-조세정대	1500*750*850		1	
1-조세정대	1500*750*850		2	
작업대	1500*750*850		2	
가스낮은렌지	1500*750*450		1	
가스렌지	1500*750*850		1	
가스부침기	1500*750*850		1	
배기후드/유지망	2500*1800*600		1	
작업대/찬장	1500*750*850		1	
퇴식콘베어	7100*600*900		1	
수저저분슈트	2280*300*500		1	
살수식잔반처리대	1500*350*900		1	
이중잔반통	@480***600		1	
담금세정대	1750*750*850		1	
이동건조대	900*600*850		1	
자동식기세척기	*1TANK/FLIGHT		1	
배기후드/유지망	1400*1200*600		1	
배기후드/유지망	1400*1200*600		1	
전기식기소독고	1500*750*1900		2	
소독고받침대	1100*600*350		1	
자외선컵소독고	1100*480*1300		2	
정수기받침대	1500*600*350		1	
컵회수차	600*600*850		2	
정수기받침대	1000*600*350		1	
다단식선반	1500*750*1800		2	
잔반처리대	1500*600*850		1	
이중잔반통	@480***600		1	
담금세정대	1800*750*850		1	
이동건조대	900*600*850		1	
PC	17"		20	
다리미			2	
다림판	제작품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다. 시설장비및공구				
적외선 온도계	비접촉식 KM-826(-20~500℃)		1	
가스누설 탐지기	후레온용		1	
방수 유량계	0~15kg/㎠		1	
조도계(디지털)	YEW-3218A, 3000LUX		1	
후크메타 (아나로그)	HIOK-3127		1	
디지털 테스타기			1	
절연저항 측정기	1500V/2000MΩ		1	
접지테스타기 및 공구	YEW-3235		1	
차동식감지기 시험기	SL-H-119, 신라		1	
연기식감지기 시험기	SL-S-119, 신라		1	
멀티테스타기	YEW-2411		1	
검전기 (특고압)	2000~25000V		1	
검전기 (저 압)	AC 80~7000V		1	
고속 절단기	TCH-405T		1	
전기 용접기	380/220V, 10KW		1	
홀다용 전선	38 SQmm, 60M		1	
리드용 전선	8 SQmm, 60M		1	
알미늄 사다리	A형, 2.0M		1	
알미늄 사다리	A형, 1.5M		1	
알미늄 사다리	A형, 1.0M		1	
알미늄 사다리	AH형, 3.0M		1	
스프레건	7호		1	
공기압축기 호스	50M, 3SP		1	
휴대용 전기드릴	SDG-10NV		1	
전기브로와	TDG 5608A		1	
운반기	600W×4501		1	
임펙트드릴	TDP-10RV		1	
전기핸드그라인더	TGH-6BA		1	
진공청소기	V1500		1	
체인블록 (호이스트)	1톤		1	
소형변압기	220V/110V, 2KVA		1	
휴대용 전기충전 드릴	DD-10		1	
권총인두	220V/110V		1	
검전드라이버	저압용		3	
파이프 바이스	RIDGID, 1/8~21/2″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각형 바이스	6″		1	
가스 용접기	중형+화구(6개)		1	
가스 절단기	대형+화구(1개)		1	
조정기	산소, LPG		1	
역화 방지기	산소용		1	
산소용 호스	KS 8mmx2Bx100M		1	
아세칠렌 호스	KS 8mmx1Bx100M		1	
산소용기 운반기	산소, LPG용기용		1	
산소통	40리터		1	
LPG통	20리터		1	
압력계	산소용접기, 100A		1	
박스오픈렌치	10~32mm		1	
소켓렌치	미리 24PCS		1	
소켓렌치	인치 24PCS		1	
조종렌치	18″		1	
동파이프 용접기	YC 국산		1	
파이프 머신	1/2~2″		1	
하수구 청소기	K-38(19~64mm)		1	
휴대용 하수구 청소기	11KG이상		1	
동파이프 커터	1/8~2″		1	
파이프렌치	36″		1	
파이프렌치	24″		1	
파이프렌치	18″		1	
파이프렌치	14″		1	
파이프렌치	12″		1	
파이프렌치	10″		1	
파이프렌치	8″		1	
수평기	300mm		1	
그리스펌프기	동력식		1	
그리스건	수동		1	
몽키스패너	KS 4″		1	
몽키스패너	KS 6″		1	
몽키스패너	KS 8″		1	
몽키스패너	KS 10″		1	
몽키스패너	KS 12″		1	
몽키스패너	KS 15″		1	
몽키스패너	KS 18″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양구스패너	KS 6본		1	
양구스패너	KS 8x9		1	
양구스패너	KS 12x14		1	
플라이어	KS 6 "		1	
플라이어	KS 8 "		1	
플라이어	KS 10 "		1	
렌치	KS 6PCS		1	
쇠톱틀	중품		1	
버니어캘리퍼스	300mm		1	
튜빙카타	RIDGID 1/4" ~21/4"		1	
디스콘봉	중		1	
케이블카타	1.5~1.25SQ, LOBSTER		1	
튜브밴다	RIDGID 3/8"		1	
터미널 압착기	1.25~14SQ LOBSTER		1	
파이프 밴더	1~11/4		1	
휴대용 가스인두	KOTELYZ, 90AUTO, 80A		1	
석재용 전기드릴	TDI-10KV		1	
유리 압축기	120KG		1	
리벳 건	2.5/3.2/4.0/4.8 A		1	
코킹 건	200mm		1	
양날톱	300mm		1	
대패	270,360		1	
목공바이스	100x200x300		1	
빠루방치	대형		1	
목수망치	중형		1	
토치램프	석유용, 2리터		1	
라. 보안장비				
무전기			4	
가스분사기			2	
휴대용소화기			2	
순찰시계			2	
교통신호봉			2	
방독면			4	
충전식라이트			2	
마. 미화장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진공청소기			1	
고압세척기			1	
청소용 카트			2	
고압호스			15	
알루미늄사다리			1	
쓰레기 압축기			1	

■ 공주대학교(예산)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가. 본시설집기비품				
1. 사생실(2인1실)				
침대	2000*1000*860	EA	160	
책상(책꽂이포함)	1200*750*1736	EA	160	
의자	430*450*670	EA	160	
옷장	750*650*1860	EA	160	
커튼	1600*1400	EA	80	
신발장	800*350*2300	EA	80	
2. 사생실(장애인실)				
침대	2000*1000*860	EA	1	
책상(책꽂이포함)	1200*750*1736	EA	1	
의자	430*450*670	EA	1	
옷장	750*650*1860	EA	1	
사이드테이블	650*250*400	EA	1	
커튼	1600*1400	EA	1	
신발장	600*350*2300	EA	1	
3. 사생실(기혼자 1인1실)				
침대	2000*1000*860	EA	2	
책상(책꽂이포함)	1200*750*1736	EA	2	
의자	430*450*670	EA	2	
옷장	1400*650*1860	EA	2	
TV테이블장	1800*600*420	EA	2	
사이드테이블	300*500*400	EA	2	
냉장고	200L	EA	2	
씽크대	1400*600*2200	EA	2	
커튼	2700*2100	EA	2	
신발장	800*350*2300	EA	2	
전기렌지		EA	2	
4. 사생실(기혼자 2인1실)				
침대	2000*1000*860	EA	18	
책상(책꽂이포함)	1200*750*1736	EA	18	
의자	430*450*670	EA	18	
옷장	1400*650*1860	EA	18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TV테이블장	1800*600*420	EA	9	
사이드테이블	300*500*400	EA	18	
냉장고	200L	EA	9	
씽크대	1400*600*2200	EA	9	
커튼	2700*2100	EA	18	
신발장	800*350*2300	EA	9	
전기렌지		EA	9	
5. 사감실				
침대	2000*1000*860	EA	1	
책상(책꽂이포함)	1200*750*1736	EA	1	
의자	430*450*670	EA	1	
옷장	750*650*1860	EA	1	
커튼	1600*1400	EA	1	
신발장	800*350*2300	EA	1	
6. 관리사무실				
사무용책상	1300*650*750	EA	3	
의자	430*450*670	EA	3	
소파	1980*860*90	EA	1	
탁자	810*520*440	EA	1	
7. 휴게실				
TV	21"	EA	6	
휴게용의자	1500*650*720	EA	6	
탁자	700*500*420	EA	6	
8. PC실				
책상	1200*750*700	EA	12	
의자	430*450*670	EA	12	
9. 독서실				
독서용책상(칸막이포함)	1200*700*720	EA	12	
의자	400*420*760	EA	12	
10. 세미나실				
회의용탁자	1500*750*750	EA	5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의자	430*450*670	EA	10	
이동식화이트보드	2000*1000*1820	EA	1	
스크린	3000*2500	EA	1	
11.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EA	4	
헬스싸이클		EA	2	
트위스트		EA	2	
체중계		EA	1	
벨트마사지		EA	1	
스트레칭매트	1800*900	EA	2	
나. 부속시설집기비품				
PC	17"	EA	4	
다리미		EA	2	
다림판	제작품	EA	1	
다. 시설장비및공구				
적외선 온도계	비접촉식 KM-826(-20~500℃)		1	
방수 유량계	0~15kg/㎠		1	
조도계(디지털)	YEW-3218A, 3000LUX		1	
후크메타 (아나로그)	HIOK-3127		1	
디지털 테스타기			1	
절연저항 측정기	1500V/2000MΩ		1	
멀티테스타기	YEW-2411		1	
검전기 (특고압)	2000~25000V		1	
검전기 (저 압)	AC 80~7000V		1	
알미늄 사다리	A형, 2.0M		1	
알미늄 사다리	A형, 1.0M		1	
알미늄 사다리	AH형, 3.0M		1	
스프레건	7호		1	
공기압축기 호스	50M, 3SP		1	
휴대용 전기드릴	SDG-10NV		1	
운반기	600W×4501		1	
임팩트드릴	TDP-10RV		1	
체인블록 (호이스트)	1톤		1	
휴대용 전기충전 드릴	DD-10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권총인두	220V/110V		1	
박스오픈렌치	10~32mm		1	
소켓렌치	미리 24PCS		1	
소켓렌치	인치 24PCS		1	
휴대용 하수구 청소기	11KG이상		1	
동파이프 커터	1/8~2 ″		1	
파이프렌치	36 ″		1	
파이프렌치	24 ″		1	
파이프렌치	18 ″		1	
파이프렌치	14 ″		1	
파이프렌치	12 ″		1	
파이프렌치	10 ″		1	
파이프렌치	8 ″		1	
수평기	300mm		1	
그리스건	수동		1	
몽키스패너	KS 4 ″		1	
몽키스패너	KS 6 ″		1	
몽키스패너	KS 8 ″		1	
몽키스패너	KS 10 ″		1	
몽키스패너	KS 12 ″		1	
몽키스패너	KS 15 ″		1	
몽키스패너	KS 18 ″		1	
양구스패너	KS 6본		1	
양구스패너	KS 8x9		1	
양구스패너	KS 12x14		1	
플라이어	KS 6 ″		1	
플라이어	KS 8 ″		1	
플라이어	KS 10 ″		1	
렌치	KS 6PCS		1	
버니어캘리퍼스	300mm		1	
디스콘봉	중		1	
케이블카타	1.5~1.25SQ, LOBSTER		1	
터미널 압착기	1.25~14SQ LOBSTER		1	
파이프 벤더	1~11/4		1	
휴대용 가스인두	KOTELYZ, 90AUTO, 80A		1	
유리 압축기	120KG		1	
리벳 건	2.5/3.2/4.0/4.8 A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코킹 건	200㎜		1	
양날톱	300㎜		1	
빠루방치	대형		1	
목수망치	중형		1	
토치램프	석유용, 2리터		1	
라. 보안장비				
무전기			3	
가스분사기			1	
휴대용소화기			1	
순찰시계			1	
교통신호봉			1	
방독면			3	
충전식라이트			1	
마. 미화장비				
진공청소기			1	
고압세척기			1	
청소용 카트			1	
고압호스			15	
알루미늄사다리			1	
쓰레기 압축기			1	



■ 한발대학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가. 본시설집기비품				
1. 사생실(2인1실)				
침대	2000*1000*860	EA	592	
책상(책꽂이포함)	1200*750*1736	EA	592	
의자	430*450*670	EA	592	
옷장	750*650*1860	EA	592	
커튼	1600*1400	EA	296	
신발장	800*350*2300	EA	296	
2. 사생실(장애인실)				
침대	2000*1000*860	EA	4	
책상(책꽂이포함)	1200*750*1736	EA	4	
의자	430*450*670	EA	4	
옷장	750*650*1860	EA	4	
사이드테이블	650*250*400	EA	4	
커튼	1600*1400	EA	4	
신발장	600*350*2300	EA	4	
3. 관리사무실				
사무용책상	1300*650*750	EA	2	
의자	430*450*670	EA	2	
소파	1680*[illegible]*900	EA	1	
탁자	810*520*440	EA	1	
4. 휴게실				
TV	21"	EA	2	
휴게용의자	1500*650*720	EA	4	
탁자	700*500*420	EA	4	
5. PC실				
책상	1200*750*700	EA	42	
의자	430*450*670	EA	42	
원탁	800*640*720	EA	2	
의자	430*450*670	EA	8	
6. 독서실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독서용책상(칸막이포함)	1200*700*720	EA	28	
의자	400*420*760	EA	28	
7. A/V실				
책상	1200*800*730		3	
의자	610*670*930		12	
TV	40"		1	
8. 세미나실				
회의용탁자	1500*750*750	EA	10	
의자	430*450*670	EA	20	
이동식화이트보드	2000*1000*1820	EA	2	
스크린	3000*2500	EA	2	
나. 부속시설집기비품				
식탁6인용	1800*800*720		52	
식탁4인용	1200*800*700		3	
식탁의자	420*420*760		324	
TV	40"		1	
밥배식대	700*650*850		1	
반찬보온배식대	900*650*850		2	
반찬상온배식대	900*650*850		2	
국및국그릇거치대	1500*650*850		2	
전기식국보온운반차	550*600*850		2	
국그릇디스펜서	600*600*850		2	
스니즈가드	1500*300*250		1	
츄레이슬라이드	5000*300*300		1	
수저및식판배분대	900*600*1100		2	
스니즈가드	4200*300*250		1	
밥배식대	1150*650*850		1	
워터릴	*15M*		1	
가스자동밥솥	*150인용*		3	
배기후드/유지망	2700*1100*600		1	
다단식선반	1200*750*1800		1	
1-조세정대	900*750*850		1	
곡물깔판	1800*600*50		1	
창고선반	1500*600*1800		2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작업대	750*750*850		1	
2-조세정대	1500*750*850		1	
1-조세정대	1200*750*850		1	
발판소독기	900*400*20		1	
페달식손세정대	330*470*840		1	
1-조세정대	1500*750*850		1	
2-조세정대	1200*750*850		1	
작업대	1200*750*850		1	
자외선칼,도마소독고	1100*480*1300		1	
냉동냉장고	1897*800*1907		1	
냉동냉장고	1260*800*1907		2	
가스부침기	1500*750*850		1	
작업대/찬장	1500*750*850		1	
가스낮은렌지	1500*750*450		1	
가스렌지	1500*750*850		1	
배기후드/유지망	3300*1800*600		1	
가스회전식볶음솥	*250 L*		1	
가스회전식국솥	*250L*		1	
배기후드/유지망	1800*1300*600		2	
다단식선반	1200*750*1800		1	
다단식선반	1200*600*1800		1	
자동식기세척기	*1TANK/FLIGHT		1	
배기후드/유지망	1400*1200*600		2	
이동건조대	900*600*850		1	
담금세정대	1800*750*850		1	
퇴식콘베어	4800*550*900		1	
전기식기소독고	1500*750*1900		2	
소독고받침대	1100*600*350		1	
자외선컵소독고	1100*480*1300		1	
정수기받침대	1000*600*350		1	
컵회수차	600*600*850		1	
다리미			2	
다림판	제작품		1	
다. 시설장비및공구				
적외선 온도계	비접촉식 KM-826(-20~500℃)		1	
가스누설 탐지기	후레온용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방수 유량계	0~15kg/㎠		1	
조도계(디지털)	YEW-3218A, 3000LUX		1	
후크메타 (아나로그)	HIOK-3127		1	
디지털 테스타기			1	
절연저항 측정기	1500V/2000MΩ		1	
멀티테스타기	YEW-2411		1	
검전기 (특고압)	2000~25000V		1	
검전기 (저 압)	AC 80~7000V		1	
알미늄 사다리	A형, 2.0M		1	
알미늄 사다리	A형, 1.0M		1	
알미늄 사다리	AH형, 3.0M		1	
스프레건	7호		1	
공기압축기 호스	50M, 3SP		1	
휴대용 전기드릴	SDG-10NV		1	
운반기	600W×4501		1	
임펙트드릴	TDP-10RV		1	
체인블록 (호이스트)	1톤		1	
휴대용 전기충전 드릴	DD-10		1	
권총인두	220V/110V		1	
박스오픈렌치	10~32mm		1	
소켓렌치	미리 24PCS		1	
소켓렌치	인치 24PCS		1	
휴대용 하수구 청소기	11KG이상		1	
동파이프 커터	1/8~2 ″		1	
파이프렌치	36 ″		1	
파이프렌치	24 ″		1	
파이프렌치	18 ″		1	
파이프렌치	14 ″		1	
파이프렌치	12 ″		1	
파이프렌치	10 ″		1	
파이프렌치	8 ″		1	
수평기	300mm		1	
그리스건	수동		1	
몽키스패너	KS 4 ″		1	
몽키스패너	KS 6 ″		1	
몽키스패너	KS 8 ″		1	
몽키스패너	KS 10 ″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몽키스패너	KS 12 ″		1	
몽키스패너	KS 15 ″		1	
몽키스패너	KS 18 ″		1	
양구스패너	KS 6본		1	
양구스패너	KS 8x9		1	
양구스패너	KS 12x14		1	
플라이어	KS 6 ″		1	
플라이어	KS 8 ″		1	
플라이어	KS 10 ″		1	
렌치	KS 6PCS		1	
버니어캘리퍼스	300mm		1	
디스콘봉	중		1	
케이블카타	1.5 ~ 1.25SQ, LOBSTER		1	
터미널 압착기	1.25 ~ 14SQ LOBSTER		1	
파이프 벤더	1 ~ 11/4		1	
휴대용 가스인두	KOTELYZ, 90AUTO, 80A		1	
유리 압축기	120KG		1	
리벳 건	2.5/3.2/4.0/4.8 A		1	
코킹 건	200mm		1	
빠루방치	대형		1	
목수망치	중형		1	
토치램프	석유용 2리터		1	
라. 보안장비				
무전기			4	
가스분사기			2	
휴대용소화기			2	
순찰시계			2	
교통신호봉			2	
방독면			4	
충전식라이트			2	
마. 미화장비				
진공청소기			1	
고압세척기			1	
청소용 카트			1	
고압호스			15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알루미늄사다리			1	
쓰레기 압축기			1	

■ 공주교육대학교(여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가. 본시설집기비품				
1. 사생실(2인1실)				
침대	2000*1000*860	EA	248	
책상(책꽂이포함)	1200*750*1736	EA	248	
의자	430*450*670	EA	248	
옷장	750*650*1860	EA	248	
커튼	1600*1400	EA	124	
신발장	800*350*2300	EA	124	
2. 사생실(장애인실)				
침대	2000*1000*860	EA	2	
책상(책꽂이포함)	1200*750*1736	EA	2	
의자	430*450*670	EA	2	
옷장	750*650*1860	EA	2	
사이드테이블	650*250*400	EA	2	
커튼	1600*1400	EA	2	
신발장	600*350*2300	EA	2	
3. 관리사무실				
사무용책상	1300*650*750	EA	2	
의자	430*450*670	EA	2	
소파	1680*810*900	EA	1	
탁자	810*520*440	EA	1	
4. 휴게실				
TV	21"	EA	7	
휴게용의자	1500*650*720	EA	14	
탁자	700*500*420	EA	14	
나. 부속시설집기비품				
다리미			2	
다림판	제작품		1	
다. 시설장비및공구				
적외선 온도계	비접촉식 KM-826(-20~500℃)		1	
방수 유량계	0~15kg/㎠		1	
조도계(디지털)	YEW-3218A, 3000LUX		1	
후크메타 (아나로그)	HIOK-3127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디지털 테스타기			1	
절연저항 측정기	1500V/2000MΩ		1	
멀티테스타기	YEW-2411		1	
검전기 (특고압)	2000~25000V		1	
검전기 (저 압)	AC 80~7000V		1	
알미늄 사다리	A형, 2.0M		1	
알미늄 사다리	A형, 1.0M		1	
알미늄 사다리	AH형, 3.0M		1	
스프레건	7호		1	
공기압축기 호스	50M, 3SP		1	
휴대용 전기드릴	SDG-10NV		1	
운반기	600W×4501		1	
임팩트드릴	TDP-10RV		1	
체인블록 (호이스트)	1톤		1	
휴대용 전기충전 드릴	DD-10		1	
권총인두	220V/110V		1	
박스오픈렌치	10~32mm		1	
소켓렌치	미리 24PCS		1	
소켓렌치	인치 24PCS		1	
휴대용 하수구 청소기	11KG이상		1	
동파이프 커터	1/8~		1	
파이프렌치	36 ″		1	
파이프렌치	24 ″		1	
파이프렌치	18 ″		1	
파이프렌치	14 ″		1	
파이프렌치	12 ″		1	
파이프렌치	10 ″		1	
파이프렌치	8 ″		1	
수평기	300mm		1	
그리스건	수동		1	
몽키스패너	KS 4 ″		1	
몽키스패너	KS 6 ″		1	
몽키스패너	KS 8 ″		1	
몽키스패너	KS 10 ″		1	
몽키스패너	KS 12 ″		1	
몽키스패너	KS 15 ″		1	
몽키스패너	KS 18 ″		1	
양구스패너	KS 6본		1	
양구스패너	KS 8x9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양구스패너	KS 12x14		1	
플라이어	KS 6″		1	
플라이어	KS 8″		1	
플라이어	KS 10″		1	
렌치	KS 6PCS		1	
버니어캘리퍼스	300mm		1	
디스콘봉	중		1	
케이블카타	1.5~1.25SQ, LOBSTER		1	
터미널 압착기	1.25~14SQ LOBSTER		1	
파이프 벤더	1~11/4		1	
휴대용 가스인두	KOTELYZ, 90AUTO, 80A		1	
유리 압축기	120KG		1	
리벳 건	2.5/3.2/4.0/4.8 A		1	
코킹 건	200mm		1	
양날톱	300mm		1	
빠루방치	대형		1	
목수망치	중형		1	
토치램프	석유용, 2리터		1	
라. 보안장비				
무전기			3	
가스분사기			1	
휴대용소화기			1	
순찰시계			1	
교통신호봉			1	
방독면			3	
충전식라이트			1	
마. 미화장비				
진공청소기			1	
고압세척기			1	
청소용 카트			1	
고압호스			15	
알루미늄사다리			1	
쓰레기 압축기			1	



■ 공주교육대학교(남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가. 본시설집기비품				
1. 사생실(2인1실)				
침대	2000*1000*860	EA	200	
책상(책꽂이포함)	1200*750*1736	EA	200	
의자	430*450*670	EA	200	
옷장	750*650*1860	EA	200	
커튼	1600*1400	EA	100	
신발장	800*350*2300	EA	100	
2. 사생실(장애인실)				
침대	2000*1000*860	EA	1	
책상(책꽂이포함)	1200*750*1736	EA	1	
의자	430*450*670	EA	1	
옷장	750*650*1860	EA	1	
사이드테이블	650*250*400	EA	1	
커튼	1600*1400	EA	1	
신발장	600*350*2300	EA	1	
3. 관리사무실				
사무용책상	1300*650*750	EA	2	
의자	430*450*670	EA	2	
소파	1680*810*900	EA	1	
탁자	810*520*440	EA	1	
4. 휴게실				
TV	21"	EA	5	
휴게용의자	1500*650*720	EA	10	
탁자	700*500*420	EA	10	
나. 부속시설집기비품				
다리미			1	
다림판	제작품		1	
다. 시설장비및공구				
적외선 온도계	비접촉식 KM-826(-20~500℃)		1	
방수 유량계	0~15kg/㎠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조도계(디지털)	YEW-3218A, 3000LUX		1	
후크메타 (아나로그)	HIOK-3127		1	
디지털 테스타기			1	
절연저항 측정기	1500V/2000MΩ		1	
멀티테스타기	YEW-2411		1	
검전기 (특고압)	2000~25000V		1	
검전기 (저 압)	AC 80~7000V		1	
알미늄 사다리	A형, 2.0M		1	
알미늄 사다리	A형, 1.0M		1	
알미늄 사다리	AH형, 3.0M		1	
스프레건	7호		1	
공기압축기 호스	50M, 3SP		1	
휴대용 전기드릴	SDG-10NV		1	
운반기	600W×4501		1	
임펙트드릴	TDP-10RV		1	
체인블록 (호이스트)	1톤		1	
휴대용 전기충전 드릴	DD-10		1	
권총인두	220V/110V		1	
박스오픈렌치	10~32mm		1	
소켓렌치	미리 24P		1	
소켓렌치	인치 24PCS		1	
휴대용 하수구 청소기	11KG이상		1	
동파이프 커터	1/8~2 ″		1	
파이프렌치	36 ″		1	
파이프렌치	24 ″		1	
파이프렌치	18 ″		1	
파이프렌치	14 ″		1	
파이프렌치	12 ″		1	
파이프렌치	10 ″		1	
파이프렌치	8 ″		1	
수평기	300mm		1	
그리스건	수동		1	
몽키스패너	KS 4 ″		1	
몽키스패너	KS 6 ″		1	
몽키스패너	KS 8 ″		1	
몽키스패너	KS 10 ″		1	
몽키스패너	KS 12 ″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몽키스패너	KS 15″		1	
몽키스패너	KS 18″		1	
양구스패너	KS 6본		1	
양구스패너	KS 8x9		1	
양구스패너	KS 12x14		1	
플라이어	KS 6″		1	
플라이어	KS 8″		1	
플라이어	KS 10″		1	
렌치	KS 6PCS		1	
버니어캘리퍼스	300mm		1	
디스콘봉	중		1	
케이블카타	1.5~1.25SQ, LOBSTER		1	
터미널 압착기	1.25~14SQ LOBSTER		1	
파이프 밴더	1~11/4		1	
휴대용 가스인두	KOTELYZ, 90AUTO, 80A		1	
유리 압축기	120KG		1	
리벳 건	2.5/3.2/4.0/4.8 A		1	
코킹 건	200mm		1	
양날톱	300mm		1	
빠루방치	대형		1	
목수망치	중형		1	
토치램프	석유용, 알코올		1	
라. 보안장비				
무전기			3	
가스분사기			1	
휴대용소화기			1	
순찰시계			1	
교통신호봉			1	
방독면			3	
충전식라이트			1	
마. 미화장비				
고압세척기			1	
청소용 카트			1	
고압호스			15	
알루미늄사다리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쓰레기 압축기			1	



별표 18

대수선 및 수선충당금 적립계획(총괄)

(단위 : 백만원, 2006년 7월31일 불변가격 기준, 부가세 별도)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2008년	1/4분기				2014년	1/4분기	148	92	56
	2/4분기					2/4분기	148	92	56
	3/4분기					3/4분기	148	92	56
	4/4분기					4/4분기	148	92	56
2009년	1/4분기	50	31	19	2015년	1/4분기	148	92	56
	2/4분기	148	92	56		2/4분기	148	92	56
	3/4분기	148	92	56		3/4분기	148	92	56
	4/4분기	148	92	56		4/4분기	148	92	56
2010년	1/4분기	148	92	56	2016년	1/4분기	148	92	56
	2/4분기	148	92	56		2/4분기	148	92	56
	3/4분기	148	92	56		3/4분기	148	92	56
	4/4분기	148	92	56		4/4분기	148	92	56
2011년	1/4분기	148	92	56	2017년	1/4분기	148	92	56
	2/4분기	148	92	56		2/4분기	148	92	56
	3/4분기	148	92	56		3/4분기	148	92	56
	4/4분기	148	92	56		4/4분기	148	92	56
2012년	1/4분기	148	92	56	2018년	1/4분기	148	92	56
	2/4분기	148	92	56		2/4분기	148	92	56
	3/4분기	148	92	56		3/4분기	148	92	56
	4/4분기	148	92	56		4/4분기	148	92	56
2013년	1/4분기	148	92	56	2019년	1/4분기	148	92	56
	2/4분기	148	92	56		2/4분기	148	92	56
	3/4분기	148	92	56		3/4분기	148	92	56
	4/4분기	148	92	56		4/4분기	148	92	56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2020년	1/4분기	148	92	56	2025년	1/4분기	148	92	56
	2/4분기	148	92	56		2/4분기	148	92	56
	3/4분기	148	92	56		3/4분기	148	92	56
	4/4분기	148	92	56		4/4분기	148	92	56
2021년	1/4분기	148	92	56	2026년	1/4분기	148	92	56
	2/4분기	148	92	56		2/4분기	148	92	56
	3/4분기	148	92	56		3/4분기	148	92	56
	4/4분기	148	92	56		4/4분기	148	92	56
2022년	1/4분기	148	92	56	2027년	1/4분기	148	92	56
	2/4분기	148	92	56		2/4분기	148	92	56
	3/4분기	148	92	56		3/4분기	148	92	56
	4/4분기	148	92	56		4/4분기	148	92	56
2023년	1/4분기	148	92	56	2028년	1/4분기	148	92	56
	2/4분기	148	92	56		2/4분기	148	92	56
	3/4분기	148	92	56		3/4분기	148	92	56
	4/4분기	148	92	56		4/4분기	148	92	56
2024년	1/4분기	148	92	56	2029년	1/4분기	98	61	37
	2/4분기	148	92	56	계		11,785	7,321	4,464
	3/4분기	148	92	56					
	4/4분기	148	92	56					

별표 18-1

대수선 및 수선충당금 적립계획(충남대)

(단위 : 백만원, 2006년 7월31일 불변가격 기준, 부가세 별도)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2008년	1/4분기				2014년	1/4분기	80	49	31
	2/4분기					2/4분기	80	49	31
	3/4분기					3/4분기	80	49	31
	4/4분기					4/4분기	80	49	31
2009년	1/4분기	27	16	11	2015년	1/4분기	80	49	31
	2/4분기	80	49	31		2/4분기	80	49	31
	3/4분기	80	49	31		3/4분기	80	49	31
	4/4분기	80	49	31		4/4분기	80	49	31
2010년	1/4분기	80	49	31	2016년	1/4분기	80	49	31
	2/4분기	80	49	31		2/4분기	80	49	31
	3/4분기	80	49	31		3/4분기	80	49	31
	4/4분기	80	49	31		4/4분기	80	49	31
2011년	1/4분기	80	49	31	2017년	1/4분기	80	49	31
	2/4분기	80	49	31		2/4분기	80	49	31
	3/4분기	80	49	31		3/4분기	80	49	31
	4/4분기	80	49	31		4/4분기	80	49	31
2012년	1/4분기	80	49	31	2018년	1/4분기	80	49	31
	2/4분기	80	49	31		2/4분기	80	49	31
	3/4분기	80	49	31		3/4분기	80	49	31
	4/4분기	80	49	31		4/4분기	80	49	31
2013년	1/4분기	80	49	31	2019년	1/4분기	80	49	31
	2/4분기	80	49	31		2/4분기	80	49	31
	3/4분기	80	49	31		3/4분기	80	49	31
	4/4분기	80	49	31		4/4분기	80	49	31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2020년	1/4분기	80	49	31	2025년	1/4분기	80	49	31
	2/4분기	80	49	31		2/4분기	80	49	31
	3/4분기	80	49	31		3/4분기	80	49	31
	4/4분기	80	49	31		4/4분기	80	49	31
2021년	1/4분기	80	49	31	2026년	1/4분기	80	49	31
	2/4분기	80	49	31		2/4분기	80	49	31
	3/4분기	80	49	31		3/4분기	80	49	31
	4/4분기	80	49	31		4/4분기	80	49	31
2022년	1/4분기	80	49	31	2027년	1/4분기	80	49	31
	2/4분기	80	49	31		2/4분기	80	49	31
	3/4분기	80	49	31		3/4분기	80	49	31
	4/4분기	80	49	31		4/4분기	80	49	31
2023년	1/4분기	80	49	31	2028년	1/4분기	80	49	31
	2/4분기	80	49	31		2/4분기	80	49	31
	3/4분기	80	49	31		3/4분기	80	49	31
	4/4분기	80	49	31		4/4분기	80	49	31
2024년	1/4분기	80	49	31	2029년	1/4분기	53	33	20
	2/4분기	80	49	31	계		6,423	3,929	2,494
	3/4분기	80	49	31					
	4/4분기	80	49	31					

별표 18-1

대수선 및 수선충당금 적립계획(공주대)

(단위 : 백만원, 2006년 7월31일 불변가격 기준, 부가세 별도)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2008년	1/4분기				2014년	1/4분기	39	25	14
	2/4분기					2/4분기	39	25	14
	3/4분기					3/4분기	39	25	14
	4/4분기					4/4분기	39	25	14
2009년	1/4분기	13	8	5	2015년	1/4분기	39	25	14
	2/4분기	39	25	14		2/4분기	39	25	14
	3/4분기	39	25	14		3/4분기	39	25	14
	4/4분기	39	25	14		4/4분기	39	25	14
2010년	1/4분기	39	25	14	2016년	1/4분기	39	25	14
	2/4분기	39	25	14		2/4분기	39	25	14
	3/4분기	39	25	14		3/4분기	39	25	14
	4/4분기	39	25	14		4/4분기	39	25	14
2011년	1/4분기	39	25	14	2017년	1/4분기	39	25	14
	2/4분기	39	25	14		2/4분기	39	25	14
	3/4분기	39	25	14		3/4분기	39	25	14
	4/4분기	39	25	14		4/4분기	39	25	14
2012년	1/4분기	39	25	14	2018년	1/4분기	39	25	14
	2/4분기	39	25	14		2/4분기	39	25	14
	3/4분기	39	25	14		3/4분기	39	25	14
	4/4분기	39	25	14		4/4분기	39	25	14
2013년	1/4분기	39	25	14	2019년	1/4분기	39	25	14
	2/4분기	39	25	14		2/4분기	39	25	14
	3/4분기	39	25	14		3/4분기	39	25	14
	4/4분기	39	25	14		4/4분기	39	25	14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2020년	1/4분기	39	25	14	2025년	1/4분기	39	25	14
	2/4분기	39	25	14		2/4분기	39	25	14
	3/4분기	39	25	14		3/4분기	39	25	14
	4/4분기	39	25	14		4/4분기	39	25	14
2021년	1/4분기	39	25	14	2026년	1/4분기	39	25	14
	2/4분기	39	25	14		2/4분기	39	25	14
	3/4분기	39	25	14		3/4분기	39	25	14
	4/4분기	39	25	14		4/4분기	39	25	14
2022년	1/4분기	39	25	14	2027년	1/4분기	39	25	14
	2/4분기	39	25	14		2/4분기	39	25	14
	3/4분기	39	25	14		3/4분기	39	25	14
	4/4분기	39	25	14		4/4분기	39	25	14
2023년	1/4분기	39	25	14	2028년	1/4분기	39	25	14
	2/4분기	39	25	14		2/4분기	39	25	14
	3/4분기	39	25	14		3/4분기	39	25	14
	4/4분기	39	25	14		4/4분기	39	25	14
2024년	1/4분기	39	25	14	2029년	1/4분기	26	17	9
	2/4분기	39	25	14	계		3,154	2,028	1,126
	3/4분기	39	25	14					
	4/4분기	39	25	14					

별표 18-1

대수선 및 수선충당금 적립계획(한밭대)

(단위 : 백만원, 2006년 7월31일 불변가격 기준, 부가세 별도)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2008년	1/4분기				2014년	1/4분기	16	9	7
	2/4분기					2/4분기	16	9	7
	3/4분기					3/4분기	16	9	7
	4/4분기					4/4분기	16	9	7
2009년	1/4분기	5	3	2	2015년	1/4분기	16	9	7
	2/4분기	16	9	7		2/4분기	16	9	7
	3/4분기	16	9	7		3/4분기	16	9	7
	4/4분기	16	9	7		4/4분기	16	9	7
2010년	1/4분기	16	9	7	2016년	1/4분기	16	9	7
	2/4분기	16	9	7		2/4분기	16	9	7
	3/4분기	16	9	7		3/4분기	16	9	7
	4/4분기	16	9	7		4/4분기	16	9	7
2011년	1/4분기	16	9	7	2017년	1/4분기	16	9	7
	2/4분기	16	9	7		2/4분기	16	9	7
	3/4분기	16	9	7		3/4분기	16	9	7
	4/4분기	16	9	7		4/4분기	16	9	7
2012년	1/4분기	16	9	7	2018년	1/4분기	16	9	7
	2/4분기	16	9	7		2/4분기	16	9	7
	3/4분기	16	9	7		3/4분기	16	9	7
	4/4분기	16	9	7		4/4분기	16	9	7
2013년	1/4분기	16	9	7	2019년	1/4분기	16	9	7
	2/4분기	16	9	7		2/4분기	16	9	7
	3/4분기	16	9	7		3/4분기	16	9	7
	4/4분기	16	9	7		4/4분기	16	9	7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2020년	1/4분기	16	9	7	2025년	1/4분기	16	9	7
	2/4분기	16	9	7		2/4분기	16	9	7
	3/4분기	16	9	7		3/4분기	16	9	7
	4/4분기	16	9	7		4/4분기	16	9	7
2021년	1/4분기	16	9	7	2026년	1/4분기	16	9	7
	2/4분기	16	9	7		2/4분기	16	9	7
	3/4분기	16	9	7		3/4분기	16	9	7
	4/4분기	16	9	7		4/4분기	16	9	7
2022년	1/4분기	16	9	7	2027년	1/4분기	16	9	7
	2/4분기	16	9	7		2/4분기	16	9	7
	3/4분기	16	9	7		3/4분기	16	9	7
	4/4분기	16	9	7		4/4분기	16	9	7
2023년	1/4분기	16	9	7	2028년	1/4분기	16	9	7
	2/4분기	16	9	7		2/4분기	16	9	7
	3/4분기	16	9	7		3/4분기	16	9	7
	4/4분기	16	9	7		4/4분기	16	9	7
2024년	1/4분기	16	9	7	2029년	1/4분기	11	6	5
	2/4분기	16	9	7	계		1,288	746	542
	3/4분기	16	9	7					
	4/4분기	16	9	7					

별표 18-1

대수선 및 수선충당금 적립계획(공주교대)

(단위 : 백만원, 2006년 7월31일 불변가격 기준, 부가세 별도)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2008년	1/4분기				2014년	1/4분기	12	8	4
	2/4분기					2/4분기	12	8	4
	3/4분기					3/4분기	12	8	4
	4/4분기					4/4분기	12	8	4
2009년	1/4분기	4	3	1	2015년	1/4분기	12	8	4
	2/4분기	12	8	4		2/4분기	12	8	4
	3/4분기	12	8	4		3/4분기	12	8	4
	4/4분기	12	8	4		4/4분기	12	8	4
2010년	1/4분기	12	8	4	2016년	1/4분기	12	8	4
	2/4분기	12	8	4		2/4분기	12	8	4
	3/4분기	12	8	4		3/4분기	12	8	4
	4/4분기	12	8	4		4/4분기	12	8	4
2011년	1/4분기	12	8	4	2017년	1/4분기	12	8	4
	2/4분기	12	8	4		2/4분기	12	8	4
	3/4분기	12	8	4		3/4분기	12	8	4
	4/4분기	12	8	4		4/4분기	12	8	4
2012년	1/4분기	12	8	4	2018년	1/4분기	12	8	4
	2/4분기	12	8	4		2/4분기	12	8	4
	3/4분기	12	8	4		3/4분기	12	8	4
	4/4분기	12	8	4		4/4분기	12	8	4
2013년	1/4분기	12	8	4	2019년	1/4분기	12	8	4
	2/4분기	12	8	4		2/4분기	12	8	4
	3/4분기	12	8	4		3/4분기	12	8	4
	4/4분기	12	8	4		4/4분기	12	8	4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년 도		계	대수선	대체
2020년	1/4분기	12	8	4	2025년	1/4분기	12	8	4
	2/4분기	12	8	4		2/4분기	12	8	4
	3/4분기	12	8	4		3/4분기	12	8	4
	4/4분기	12	8	4		4/4분기	12	8	4
2021년	1/4분기	12	8	4	2026년	1/4분기	12	8	4
	2/4분기	12	8	4		2/4분기	12	8	4
	3/4분기	12	8	4		3/4분기	12	8	4
	4/4분기	12	8	4		4/4분기	12	8	4
2022년	1/4분기	12	8	4	2027년	1/4분기	12	8	4
	2/4분기	12	8	4		2/4분기	12	8	4
	3/4분기	12	8	4		3/4분기	12	8	4
	4/4분기	12	8	4		4/4분기	12	8	4
2023년	1/4분기	12	8	4	2028년	1/4분기	12	8	4
	2/4분기	12	8	4		2/4분기	12	8	4
	3/4분기	12	8	4		3/4분기	12	8	4
	4/4분기	12	8	4		4/4분기	12	8	4
2024년	1/4분기	12	8	4	2029년	1/4분기	8	5	3
	2/4분기	12	8	4	계		921	618	303
	3/4분기	12	8	4					
	4/4분기	12	8	4					